

현안분석 2001-

디지털경제법제④

프랑스의 電子政府法制

朴 均 省

한국법제연구원

프랑스의 電子政府法制

The Electronic Administration in France

研究者 : 朴均省(경희대 법대 교수)
Park Kyun-Sung

2001.10

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제 1 장 머리말	7
제 2 장 1998년까지의 지방과 공공시설법인의 행정정보화	11
제 3 장 중앙행정정보화의 시발점 : 프랑스사회 정보화를 위한 정부행동계획	15
제 1 절 PAGSI의 주요내용	15
제 2 절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행정서비스현대화	16
1. 시민의 인터넷을 통한 행정에의 접근 용이성의 제고	16
2. 개인정보의 비밀유지와 사생활 보호	17
3. 국가의 미니벨서비스를 인터넷서비스로 2년 이내에 발전적으로 변경	17
4. 전자적 방식에 의한 행정기관에의 접근	18
5. 전자(민원)행정절차의 개발	18
6. 전자서명	19
7. 인터넷접속의 용이성 제고(정보격차해소)	19
8. 정보제공에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19
9. 국가운영의 현대화	20
제 3 절 전자행정의 정책방향(<i>Les orientations politiques de l'administration électronique</i>)	21
제 4 장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기반 정비	23
제 1 절 지방행정망	23
1. 지역정보체계(<i>Systèmes d'information Territoriaux(SIT)</i>)	23

2. 환경보건에서의 교환망(Le Réseau d'échanges en santé environnementale)	25
제 2 절 중앙행정망	25
1. AdER(Administration En Réseau)	25
2. Vit@Min사이트	26
3. 행정각부의 내부행정망(Intranet)	26
4. 입법망조직체계(SOLON(système d'organisation en ligne des opérations normatives))	26
제 3 절 외부행정망(Extranets)	27
제 4 절 행정기관 인터넷사이트의 구축	28
1. 국가의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법인의 인터넷 사이트에 관한 1999년 훈령	28
2. 공공인터넷사이트의 내용 및 구성에 관한 일반원칙	30
3. 사이트 창설절차	36
제 5 절 전자우편의 보급	41
제 6 절 인터넷민원 사이트 구축 : 종합행정서비스사이트	42
제 7 절 국민의 정보접근 증대(정보격차해소)	42
제 8 절 예산조치	43
제 5 장 전자정부 추진체계	45
제 1 절 추진주체	45
제 2 절 조정주체 및 통합조직	45
1. 국가개혁행정각부위원회(DIRE)(Délégation interministeriel à la réforme de l'Etat)	45
2. 행정간소화위원회(COSA)(La Commission pour les Simplification Administratives)	45

3. 국가개혁 행정 협의회(CIRE)(Comité interministeriel pour(à) la Réforme de l'Etat)	46
4. 정보화사회를 위한 행정각부위원회(CISI)(Comité Interministériel pour la Société de l'Information)	46
5. 행정서식등록센타(CERFA)(Centre d'enregistrement (et de révision) de formulaires administratifs)	47
6. 정보기술전략위원회(CSTI)(conseil stratégique d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47
7. 행정정보통신기술원(ATICA)	47
8. 중앙정보시스템안전국(SCSSI)	50
제 3 절 집행주체	50
제 6 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51
제 7 장 전자행정구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동향	53
제 1 절 전자행정의 안전성 보장	53
1. 전자서명법과 동법 시행령의 제정	53
2. 암호화	59
3. 기타 안전장치	59
4. 안전담당기관	59
제 2 절 전자행정절차	59
1. 문서작성표준	59
2. 전자서식에 관한 명령	60
3. 전자민원절차 등 쌍방향서비스	62
4. 민원처리과정의 공개	67
5. 전자행정기관	67
6. 행정절차 및 행정서식의 간소화와 전자행정	68
7. 전자행정과 기존의 전통적 행정방식	72

제 3 절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정비	72
1. 전자문서의 공개	72
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73
3. 적극적 정보제공	74
4. 정보제공의 유료화문제	79
5. Balladur 통첩	80
6. 행정기관의 편집활동	81
7. 정보제공과 행정기관의 책임	82
제 4 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정비	82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규율의 배경과 경과	82
2.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85
3. 행정각부 인터넷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86
4. 전자카드	88
제 5 절 정보접근에서의 평등	89
제 6 절 정보화사회에 관한법률안(<i>Projet de loi sur la société de l'information</i>)	90
1. 정보에의 접근(제1편)	90
2. 인터넷통신의 자유	93
3. 전자상거래	94
4. 맘에의 접근	95
5. 정보화사회의 안전성	96
제 8 장 맷음말	99
참고문헌	103

제 1 장 머리말

프랑스는 선진적으로 정보화가 진행된 서유럽의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보화가 늦은 나라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프랑스는 이웃 선진유럽국가에 비하여 행정의 정보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정보화가 뒤쳐 있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1998년 이후 매우 의욕적이고 계획적으로 프랑스 사회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고, 행정의 전자화도 사회정보화의 한 내용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때 이 분야에서 그 동안의 지체를 만회할 정도의 큰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이미 1999년에 프랑스공공인터넷사이트의 수준은 유럽에서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

프랑스에서는 전자정부라는 말 대신에 전자행정(Administration électronique)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행정의 전자화가 주로 행정부내의 행정기관 및 대국민행정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전자행정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행정서비스의 현대화를 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기관과 이용자 사이의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²⁾

공무원및국가개혁부장관 Sapin은 2000년 5월 26일 “전자행정을 향하여”라는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이 전자정부 구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국가를 개혁하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자행정의 발전이 필요하다. 인터넷 시대에 시민들은 보다 시민의 요구에 응하고 상호 협의하는 서비스를 요구하고 이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며 개인적인 서비스를 요구한다. 행정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이 이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1) 1999년의 암스테르담여름대학의 연구 참조 : The Amsterdam maastricht summer university, france finished on top in the first Internet intelligence test of EU Government, 1er aout 1999(www.amsu.edu/JAC).

2) Thierry Carcenac, député du Tarn, “pour une administration électronique citoyenne”(Thierry Carcenac 의원의 수상에 대한 전자행정에 관한 “시민전자행정을 위하여”라는 보고서), 2001.4.19.

수상에 의해 계획청(Commissariat général du Plan)에 맡겨진 국가와 정보통신기술의 관계에 관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전자행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³⁾ ① 행정서비스의 질의 향상, 행정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의 첫 번째 목표는 시민과 기업의 기대에 보다 잘 부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개, 행정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 권리 및 행정민원에 대한 안내, 전자포럼 등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행정결정에의 참여,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식의 제공 및 인터넷을 통한 신고, 신청 등 전자행정절차의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다. ② 국가운영의 개선, 이를 위하여 전자우편함의 설치, 정보망을 통한 행정기관의 정보수집, 행정기관 상호간의 정보의 공유 및 업무의 협력 등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의 생산성의 향상 및 예산의 절감은 그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의 행정정보화와 달리 프랑스 행정정보화의 일차적인 목표는 아니다. 행정의 효율성은 행정정보화의 목표라기 보다는 행정정보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인식되고 있다. ③ 행정운영의 현대화, 프랑스에서 행정정보화는 국가개혁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행정정보화를 통한 행정의 현대화는 계층제의 재정립, 행정기관 상호간의 폐쇄성의 해소 및 행정주체 상호간 및 행정주체와 민간 사이의 협력의 강화가 도모되어야 한다.

현재 정보통신기술이 행정내에서의 업무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프로그램이 착동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통신기술의 실행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는 부문의 경험으로부터 장점을 취한다(도구와 영향, 새로운 업무방식,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의 비교) ②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또는 요청되는 영향에 행정기관을 준비한다.(행정에 있어서의 현대화의 지침 및 5개의 행동체안) ③ 이러한 발전을 조직화한다(변화행태 및 정보통신직무의 발전).

전자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제기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또는 법이론적 해결이 요구된다. 행정조직의 정보화는 계층제 및 행정기관간의 폐쇄적인 권한의 분배구조의 변화를 요구

3) "L'Etat et l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2000,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p.59 et s.

하고 있고, 대국민행정에 있어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의 발신·수신 및 발신·수신시점의 확인, 전자정보의 공개 및 적극적 제공의 문제, 전자(민원)행정절차의 문제, 전자행정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 전자행정앞에서의 국민의 평등, 기존의 전통적 행정과 새로운 행정방식인 전자행정과의 관계처럼 등 수많은 법적 문제가 제기된다.

이 글은 프랑스의 행정정보화의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행정정보화에 있어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중 행정정보화에 필요한 법제도의 정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프랑스는 1998년 이전에도 지방과 공공시설법인을 중심으로 행정정보화가 추진되고 있었지만 행정정보화 특히 중앙행정정보화가 계획적으로 그리고 밀도있게 추진된 것은 1998년 '프랑스사회 정보화를 위한 정부행동계획'(Programme d'action gouvernement pour préparer l'entrée de la France dans la société de l'Information) (PAGSI)이 발표된 이후이다. 전자행정의 구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도 이 정부계획이 발표된 이후 본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 행정정보화를 뒷받침하는 입법은 행정정보화를 위한 일반 법의 제정 등 체계적인 입법을 통하여 행해지기 보다는 행정정보화의 진전에 수반하여 제기되는 입법정비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그 이유는 행정의 정보화는 많은 부분이 정보화기술에 의존되고 있는데 아직 정보화기술이 완전히 개발되어 있지 않고 그 발전에 불투명성을 내포하고 있고, 행정정보화의 내용이나 법적 문제도 아직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프랑스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행정정보화 등 사회정보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위의 정부행동계획에 따라 행정정보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또한 행정정보화가 법적 기초위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정보화를 뒷받침하는 입법도 매우 활발한 편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대국민행정의 정보화보다는 행정내부의 정보화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⁴⁾ 행정정보화에 관한 입법은 법률 또는 명령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경우보다는 통첩이라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경

4) 다만, 행정내부의 정보화와 대국민행정의 정보화가 시간적으로 선후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오히려 행정정보화의 궁극적 목적은 대국민행정의 정보화에 있으나 대국민행정을 전자화하기 위하여는 행정내부의 정보화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행정내부의 정보화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제 1 장 머리말

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행정정보화에 관한 입법의 검토에 행정규칙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아래에서는 프랑스 행정정보화의 상황과 관련 법제도의 정비동향을 소개하고, 프랑스의 경험이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정보화의 추진에 따른 입법정비에 줄 수 있는 몇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제 2 장 1998년까지의 지방과 공공시설법인의 행정정보화

1990년이래 주로 지방자원에서 행정정보화가 추진되었다. 그런데, 이 지방행정정보화는 법제도에 의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고, 정보통신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원 및 시장 또는 지방공무원의 개인적인 정보화의지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행정정보화의 수준에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

1990년대에 정보통신기술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행정정보화의 시도와 시험계획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었다. 국가의 지방행정기관도 행정정보화에 관심을 가졌지만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정보화의지가 약했다.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은 대도시에서 두드러졌지만, 농촌지역에서도 행정정보화가 크게 진행된 지역도 있었다. 농촌의 작은 꼬뮨느⁵⁾에서는 도와 레지옹⁶⁾의 지원에 의해 정보화가 진행되었다⁷⁾. 대표적인 예로 Bretagne 레지옹의 꼬뮨느정보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211개의 “사이버꼬뮨느” 사이트가 브로띠뉴 레지옹의회의 재정지원에 의해 창설되었다. 레지옹의회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의 80%를 지원하고(최고 80,000프랑), 청년의 고용이라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용되는 “사이버꼬뮨느”的 운영자의 보수 및 교육을 지원한다.

I'Essonne도청, l'Isère도청 및 Strasbourg도청⁸⁾의 예는 다음과 같다. I'Essonne도의 “Accueil 91” 많은 컴퓨터파일에 분류되어 있는 일상

5) 꼬뮨느는 프랑스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데 인구가 1000명도 되지 않는 곳으로부터 파리와 같이 큰 대도시가 존재한다.

6) 프랑스는 지방자치단체가 3단계로 되어 있다. 꼬뮨느(Commune)는 기초지방자치 단체이고, 도(departement)는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하며 레지옹(Région)의 구역은 2 이상의 도로 구성되어 있다.

7) 1998년까지의 지방정보화에 대하여는 Henri d'Attilio 의원의 수상에 대한 보고서 “Le développement des nouvelles technologies d'information et de communication dans les collectivités locales : de l'expérimentation à la généralisation” 참조.

8) 프랑스에서 도청(préfecture)은 국가의 일반지방행정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집행기관의 장은 도의회의장이다.

생활의 기본적인 주제에 관한 전체 320가지의 지방정보(운전면허증, 구직, 마약퇴치 등)를 일반공중에게 제공한다. 도의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국가 특별지방행정기관, 시청, 협회 등)은 대부분 디스크으로 이 화일을 받았다. 또한 공중이 열람할 수 있는 쌍방향통신망(borne interactive)이 도청의 대기실에 설치되었다.

I'Isère도는 일찍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운전면허증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험용 행정서식서비스와 내부통신망(Intranet)을 설치하였다.

마지막으로 갑속으로부터 출소하는 회수의 사회복귀에 관한 절차에 관한 정보데이타베이스(숙소, 교육, 행정상황, 일자리, 건강상태 등)를 가지고 있는 Strasbourg도의 유치장에 1998년 설치된 쌍방향통신망을 예로 들 수 있다⁹⁾.

"Marly-Cyber-le-Roi"프로젝트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 프로젝트의 모토는 각 주민에게 미래 정보화사회의 열쇠를 주는 것이다. 모든 시민에게 전자우편주소를 부여하고 6개의 사이버공간(도서관, 협회방, 젊은 이의 공간, 일자리제공서비스, Mary의 시평, 노인공간)을 설치하는 것이다. 시청은 지방의회 의원 및 시장 그리고 행정기관과의 적절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우편함을 개설하였고, 전자행정절차를 개시하기 시작하였다(주민등록, 도시계획, 사회보장분야). 전자화폐인 Marly카드는 시행청서비스 수수료의 결제수단이 된다. 그리고, 경제활동분야에 있어서 원격근무(télétravail)의 발전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전자사무실이 설치되었고, 기업을 위하여 멀티미디어실이 설치되었고, 각 기업이나 상인은 인터넷상에서 그들의 활동을 소개할 수 있다.

공공시설법인은 독립된 법인이므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는다. 이 점이 공공시설법인이 독자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많은 학교 또는 대학이 정보화 추진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에 창설된 RENATER망은 프랑스 인터넷의 주된 소개자(introducteur)이었다. 교육부장관은 1997년 교육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계획을 세웠다. 그 목표는 2000년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에 있어 각 학생이 다

9) 기타 지방행정정보화에 대하여는 Innovations-services-publics.gouv.fr 사이트 참조.

음과 같은 인터넷능력을 보유하는 것에 있다 : 유치원부터 컴퓨터를 다루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초반에 전자우편을 실행하고, 초등학교 후반에 Wep에 접속하도록 하고, 중학교부터 맘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고등학교 이후 개인주소를 갖는 것이다.

공중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대규모 공공시설법인은 상당히 진전된 전자서비스를 발전시켰다. 예를 들면, 국립직업원(ANPE)은 인터넷에서 일자리 제공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랑스에서 큰 병원은 공공시설법인인 경우가 많는데, 병원시설의 정보화는 상당히 진척되었고, 의료정보의 인터넷망을 통한 충신동 원격의료가 실시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시설법인의 정보화는 국가행정 정보화에 좋은 경험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사회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공중의 인터넷을 통한 맘에의 접근을 촉진하는 측면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는 법제도에 의해 체계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지방의원 및 시장의 의지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지방의원이나 시장이 정보화의지를 갖지 않은 곳에서는 정보화가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의 경험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도입되고 일반화된 예는 그리 많지 않다.

제 3 장 중앙행정정보화의 시발점 : 프랑스사회 정보화를 위한 정부행동계획(Programme d'action gouvernement pour préparer l'entrée de la France dans la société de l'Information)(PAGSI)

수상이 1998년 1월 16일 '정보사회를 위한 행정각부위원회'에서 프랑스 사회 정보화를 위한 정부행동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행동계획이 프랑스의 중앙행정정보화의 시발점이자 지침이 되고 있다. 이 활동계획이 발표되기 전 1997년 8월에 이미 현 수상인 리오넬 조스뱅은 프랑스사회의 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위한 연설을 Hourtin에서 하였다.

이 행동계획은 정보화의 우선순위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취해질 조치와 함께 실행방식도 구체화하고 있다.¹⁰⁾

제 1 절 PAGSI의 주요내용

이 행동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6개의 구체적인 시책을 위하여 15억 프랑의 예산조치를 취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 ① 교육에의 새로운 정보기술의 적용 및 정보화교육
- ② 네트워크를 위한 적극적인 문화정책 및 인터넷에서의 프랑스의 역할 증대
- ③ 공공서비스의 현대화(행정내부에서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현대화)
- ④ 기업을 위한 지원(통신에의 접속, 2000년 문제, 유로이행문제 등)
- ⑤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의 연구 및 기술혁신에의 대응

10) 정부행동계획(PAGSI)에 관한 정보는 www.internet.gouv.fr 사이트 참조. 수상은 국가계획청(Commissariat général du Plan)(www.plan.gouv.fr)에 행정에 정보통신기술이 도입된 후의 정보망에 의한 행정의 법적 문제와 전망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다음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 L'Etat et l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La documentation Française.

⑥정보통신이용자를 보호하고 본분규범이 규정하는 새로운 정보네트워크규제의 필요에 부응

아래에서는 이들 우선적 정보화시책중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행정의 현대화에 대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제 2 절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행정서비스현대화

전자행정은 시민 및 기업과 행정기관 사이의 관계의 개선과 내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우선 전자행정은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저렴하고 쉽게 제공하고, 업무시간의 제약과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고 24시간 행정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며 행정기관에 출석함이 없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전자행정은 업무방식의 현대화 및 행정조직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며 공무원의 참여와 교육을 요구한다. 전자행정을 통하여 국가는 시민에게 보다 투명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된다.

전자행정이 진행되고 정보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기관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사생활의 보호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시민의 인터넷을 통한 행정에의 접근 용이성의 제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행정기관과 국민사이의 협의를 통한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종이문서를 전자문서화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각부는 행정문서조정위원회(*la Commission de coordination de la documentation administrative(CCDA)*)와 협력하여 전자정보화 및 인터넷에서의 제공계획을 1998년 상반기 중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도입에 따라 가능하게 되는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이미 건설교통부 사이트는 파리지역의 교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국립취업청은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개인정보의 비밀유지와 사생활 보호

수상은 개인정보에 관한 1995년의 유럽공동체 지침의 입법화와 관련하여 법전화고등위원회 Guy BRAIBANT 위원장에게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인 1978년의 정보처리, 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Loi n° 78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의 개정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위탁하였다.¹¹⁾

3. 국가의 미니텔서비스를 인터넷서비스로 2년 이내에 발전적으로 변경

프랑스에서는 미니텔을 통해 이미 오래 전부터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그 동안 미니텔을 통해 제공되던 정보와 서비스는 1999년 말까지 인터넷을 통해 그 제공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과 행정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다.

일부 상업화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본질적인 정보는 무료로 제공될 것이다.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본질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할 것이다.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8년 1월 레지프랑스(LEGIFRANCE) 사이트를 개설할 것이다.

아드미프랑스(ADMIFRANCE) 사이트를 1998년 봄 개설하여 공공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제공하고, 행정민원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서식등록및수정위원회(*le Centre d'enregistrement et de révision des formulaires administratifs(CERFA)*)에 의해 작성되는 천자서식을 제공할 것이다. 행정각부행정상담센타(*Centres interministériels de renseignement administratif(CIRA)*)는 천자적 방식에 의한 행정정보·상담을 제공할 것이다.

11) 이에 따라 1998년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 *Données personnelles et sociétés de l'information,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8.*

4. 전자적 방식에 의한 행정기관에의 접근

대다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행정기관은 2000년 전에 인터넷주소를 보유할 것이며 전자우편을 받고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5. 전자(민원)행정절차의 개발

전자행정절차는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관련하여 진행된다. 절차간소화위원회(*la Commission pour la Simplification des Formalités(COSIFORM)*)는 1997년에 행정각부간 전자절차기본지침(*un schéma directeur interministériel des téléprocedures*)을 작성하고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행정절차간소화조치를 마련하였다.

이미 전자행정절차가 성공리에 시범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자행정절차에 의한 사회보장분야에서의 사회보장자료의 연간보고, 조세신고, 관세신고를 실시하고 있다. 전자행정절차에 의한 운전면허 취득건수는 1997년 새 자동차의 20%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전자행정절차가 확대 실시될 것이다. 행정서식이 1998년 말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입수 가능하게 할 것이다. 1998년 말까지 행정서식등록 센터(*Centre d'enregistrement des formulaires administratifs (CERFA)*) 주도하에 서식전자화가 실시될 것이다. 1998년 봄 개설되는 ADMIFRANCE 사이트에서 전자서식이 다운로드 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서식의 전자전송이 1998년에 실현될 것이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행정서식의 제출이 1998년 말 이전에 실현될 것이다. 이 경우 온라인상 서식작성과 관련하여 도움이 제공되고 설명서가 공시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전자화할 행정절차목록이 조세신고, 사회보장신고 및 조달행정에서 작성될 것이며 실행일정이 공개될 것이다.

그리고, 전자행정절차의 일반화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행정각부는 전자행정절차발전 3개년 계획을 1998년 상반기중 수립할 것이다. 이 계획에서

전자결차화할 절차목록과 실행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그 계획은 전자문서 교환을 위한 EDIFACT규범의 준수에 있어서 특히 행정각부간전자결차 기본지침(*le schéma directeur interministériel des téléprocedures*)과 합치하여야 한다.¹²⁾

사회보장부담금의 신고와 결제가 우선 전자화 될 것이다.

1999년 초까지 기업은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될 것이고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도움을 받을 것이다.

6. 전자서명

행정과 국민 사이의 전자서명의 인정을 위한 법적 기술적 조건을 확정할 것이다. 문서의 진정성의 문제와 교환의 안전성과 비밀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전자문서의 증명력의 문제가 제기된다. 전자서명(signature électronique) 및 암호화(cryptologie)의 증가에 따라 더욱 큰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1998년부터 전자서명규범이 이용자에게 제안될 것이며 1998년 말 이전에 행정에 의한 저자서명의 진정성과 인증의 기술적 법적 조건이 제안될 것이다.

7. 인터넷접속의 용이성 제고(정보격차해소)

1998년에 1000개의 우체국에 인터넷 접속시설을 갖출 것이며 주민과 가까이 있는 행정기관(군청, 행정서비스센타, 도서관, 지방취업소등) 등의 주민접촉장소에 인터넷 접속시설을 설치한다.

농촌과 교외에서 전자행정서비스가 1999년에 실현될 것이다.

8. 정보제공에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국가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공중의 행정정보에의 접근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것이다.

12) 자세한 것은 M. LORENTZ 보고서 참조.

정부정보및프랑스문서청은 지방의 필요에 응하는 행정정보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접근을 제공하는 수단을 연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행정기관간 연구팀을 만들 것이다. 이 정보는 중계조직(안내기관, 협회 등)에 의해 이용될 것이다.

9. 국가운영의 현대화

행정망을 구축하여 행정기관간 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시스템을 현대화하고 행정업무방식을 행정정보화에 맞추어 변경하고 공무원을 교육한다. 정보시스템은 인터넷표준과 합치하여야 한다. 공개망에의 개방이 고려되어야 한다. 교환되는 정보의 안전성, 무결성 및 비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인트라넷의 개발이 편리되어야 한다.

행정각부는 전자민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1998년 말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공무원이 전자우편함에 접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터넷과 양립할 수 있는 메시지표준이용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행정각부간 우편이 1998년에 상호 연결될 것이다.(인트라넷 구축)

1998년 4월말까지 국가현대화에 대한 인테넷의 기여에 관한 보고서가 M. Jean-Paul BAQUIAST에 의해 제출될 것이다.

행정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중앙기관과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사이 영토정보체계(SIT)가 발전될 것이다.

국가정보화의 행정 및 국민에 대한 영향분석 및 내부업무방식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실시될 것이다.

행정내에서의 전자업무의 확대를 조장하고 1998년 상반기중 원격근무 헌장을 작성하여 공무원의 정보화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정보체계를 현대화함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제공되고 개발되는 해결책을 선택하도록 한다.

정보기술의 사용에 맞추어 국가예산관리 및 공무원관리체계가 재정비될 것이다.

특히 보건분야에서 정보체계의 현대화가 진행될 것이다 보건정보망은

진료기록, 의료정보은행자문, 감독 및 위생경보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 3 절 전자행정의 정책방향(Les orientations politiques de l'administration électronique)

행정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이 두 행정각부 위원회에 의해 결정되었다. 2000년 10월 12일 열린 국가개혁행정각부위원회(CIRE)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 보다 많은 수의 전자행정서비스 및 이용자를 위한 전자행정과 질 높은 결차를 통하여 이용자를 위한 전자행정서비스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고, 2000년 7월에 열린 정보화사회를 위한행정각부위원회(CISI)에서 공무원교육의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있는 정보망의 구축 및 실효성 있는 행정서비스창출에 의해 국가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4 장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기반 정비

2000년 6월 6일 공직및국가개혁부장관 Michel Sapin 장관은 Thierry Carcenac 의원에게 “무료소프트웨어(logiciels libres)”에 관한 연구를 위탁했다. 그 내용은 Linux 또는 Apache와 같은 무료소프트웨어의 장점 및 필요한 경우에 행정에 있어서 그들의 사용과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이 임무는 정보사회를 위한 정부활동계획(PAGSI)에 의해 1998년 정해진 지침의 차원에서 이용자에게 접근이 용이하고 영속성 있고, 호환성 있는 행정정보체계의 구성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의 분석에 관한 것이다.¹³⁾

프랑스에서는 무료운영프로그램을 사용하려는 선택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료 운영프로그램의 경우 그 원천코드가 공개되고 그 발전이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행정에서 그 이용과 발전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있다는 점 때문에 무료운영프로그램을 선택하려고 한다.

국토정비및지역활동청(La Délégation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ction régionale)(DATAR)는 통신망의 설치조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 1 절 지방행정망

1. 지역정보체계(Systèmes d'information Territoriaux(SIT))

SIT는 지방(도 또는 레지옹)에서의 국가지방행정기관간을 연결하는 내부행정망(Intranet)이었는데¹⁴⁾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접속할 수 있게 되어 지방에서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여 국가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행정망이 되었다.

13) 자세한 것은 공무원및국가개혁부 사이트에 있는 관련자료(2000년 6월 6일자), M TIC의 관련서류 “Le bouquet du libre” 참조

14) 프랑스에서는 도나 레지옹에 지방자치단체인 도나 레지옹이외에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인 도청이나 레지옹청이 별도로 존재한다.

각 도에 설치되어 있고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이 맘에의 접속문제를 관찰한다. 이는 국가기관의 엑스트라넷의 하나이다. 1999년 1월 설치계획이 확정되고 2000년 12월 현재 거의 전지역에 설치되어 있다.¹⁵⁾

그 내용과 사용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가 2001년 3월 12일 공고되었다. 가이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정보의 공동이용 : 국가행정기관 사이의 정보의 공동이용과 필요한 경우 동일한 도(또는 레지옹)에서의 지방자치단체와 정보를 공동이용한다. ②문제에 대한 협의를 통한 지방자치정책에 있어서 국가행정기관간 협력 과제별 의견을 교환한다. ③전자민원 등에 있어서 행정기관간(국가행정기관간 및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진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④지방공공정책의 상대방(영조물법인, 지방자치단체, 협회, 자문을 하는 전문가 등)과의 공동작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되어 있다.¹⁶⁾ 앞으로의 과제는 위와 같은 이 정보망의 이용을 현실화하는 데 두고 있다.

Auvergne 레지옹의 SIT는 다음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이 맘은 레지옹과 도에 있는 여러 국가기관 사이의 진밀한 협력에 의해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맘에 참가하는 각 국가기관은 자신이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침적된 여러 정보를 이용한다. 이 맘에는 경제상황지표, 각 꼬뮨느의 기본적인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꼬뮨느정보데이터베이스, 행정기관간의 정보교환과 공동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장치가 제공되고 있다.

물정책과 같이 도차원에서 여러 국가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업무에 SIT가 활용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IT의 행정각부기관을 연결하는 우편함은 여러 관계기관이 명령안 등의 교환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통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 SIT상에서 발전된 회의는 물연합체(MISE)의 월간 회의와 서류의 심사를 위한 주체별회의의 조직을 가능하게 한다.

15) www.fonction-publique.gouv.fr/SIT.

16) La circulaire relative à la mise en place des systèmes d'information territoriaux, 2000년 4월 20일, SIT에 관한 자세한 것은 MTIC 사이트와 공무원 및 국가개혁부 사이트 참조.

- 공유공간을 통하여 서류도서관의 설치를 가능하게 한다(우편, 모델 명령, MISE의 법령과 부속서 등)
- 여러 국가기관에 의해 심사되는 신고서류 및 허가신청서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제출을 가능하게 한다.

중앙행정망인 AdER이 개통된 후 이 중앙행정망이 지방에도 연결되기 를 기대하며 지역정보체계(SIT)의 도입이 주춤하였지만, 지역정보체계는 AdER이 지방에 연결된 경우에 이에 편입될 수 있으므로 SIT의 도입은 계속될 것이 권고되고 있다.

2. 환경보건에서의 교환망(*Le Réseau d'échanges en santé environnementale*)

환경보건에서의 교환망(RESE)는 1997년에 창설되었는데, 이 망은 보건 및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도와 레지옹의 여러 국에 흩어져 있는 환경보건분야의 전문가들의 공동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 망은 현장실무자에 의해 제기된 법적 기술적 문제에 대해 최선의 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얻어진 답은 국가차원에서도 이용될 수 있다. 이 망에서의 통신방식은 우편함과 인터넷상의 특별공간이다. 즉, 우편함을 통하여 실시간 중요정보와 DRASS Loire-Atlantique에 의해 작성된 월간뉴스가 배포되고, 특별공간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개입주제(대기, 소음, 물, 위생 ...)별로 여러 기관에서 생성된 메모와 주요 법령집으로 구성된 기초문헌을 점진적으로 구성한다. 그러므로 이 교환망은 전국에 걸쳐 있는 전문가 사이의 지식의 상호교환 및 공동작업의 도구가 된다. 이 망의 운영은 DRASS Languedoc-Roussillon에 의해 행해진다.

제 2 절 중앙행정망

1. AdER(*Administration En Réseau*)

2000년 5월 말부터 중앙행정기관차원에서 최초의 행정간 인트라넷인 AdER(*Administration En Réseau*)이 개통되었다. 이 망은 행정기관

간을 연결하는 맘으로 이 맘을 통하여 행정기관간의 정보 및 의견의 교환이 안전하게 행해질 수 있게 되었다.¹⁷⁾ 이 맘에는 안전이 보장된 우편함, 주소록 및 공유정보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맘은 앞으로 인터넷행정에 있어 단일입구 및 단일창구의 역할을 할 것이다.

2. Vit@Min사이트¹⁸⁾

이 사이트는 행정각부간 협력작업장치인 Extranet의 하나이다. 2000년 11월 6일과 12월 22일에 개설되었다.

2001년 1월말 현재 6개의 작업이 행해지고 있고, 750명의 이용자 주소가 있으며 하루 약 150건 정도의 접속이 있다.

이 엑스트라넷과 연결하고자 하는 자(공공 인트라넷과 엑스트라넷)는 사전에 통지하여야 그 접속이 가능하다.

3. 행정각부의 내부행정망(Intranet)

재무부내부망(Intranet du MEF)인 Alize는 인사·현대화·행정국에 의해 1998년 7월 1일 창설되었다. 이 맘은 전화번호부와 업무자료(조세일반법전, 공공거래법규 등), 교육에 관한 정보, 뉴스(유로화, 신문 등) 및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직접 접속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각 국의 필요에 대응하는 국의 행정망이 Alize내에 설치되어 있다. 이들 국의 맘은 전자우편함, 업무자료 또는 업무에 관한 뉴스를 제공한다. 공공회계국에 의해 설치된 국고맘은 1999년 12월 이 국을 4000명의 회계관에 연결하였다.

4. 입법망조직체계(SOLON(système d'organisation en ligne des opérations normatives))

SOLON는 법률과 명령안의 준비를 위하여 행정각부의 비서실과 내각사무처를 연결하는 맘이다. 법령을 작성함에 있어서 행정각부와 내각 사

17) www.mtic.pm.gouv.fr/programmes/ader.

18) <http://www.vitamin.gouv.fr>

무처 사이에 법령안에 관한 문서의 송부가 적지 않은 행정부담이 된다. SOLON은 이와 같은 관련문서의 송부를 맴을 통하여 하는 제도이다.

- 이 맴은 송부되는 문서의 양을 줄이고 이전시간을 줄임으로써 정보의 송신을 가속화한다.
- 이 맴은 문서도서관을 이용자의 처분하에 등으로써 정보와 전문의견에의 접근을 단순화한다.
- 이 맴은 허가받은 자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령안 작성업무의 안전성을 보장한다.

제 3 절 외부행정망(Extranets)

외부행정망(Extranets)은 행정주체 상호간 및 행정주체와 시민 사이를 연결하는 맴을 말한다. 지역입원청(ARH)의 외부행정망의 설치 및 운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맴은 노동 및 연대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입원청¹⁹⁾이 1999년 말 창설하였다. 이 맴에는 국가기관, 의료보험조직 및 건강공공시설법인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맴은 지역입원청의 당사자 및 그의 관할에 속하는 건강공공시설법인 사이의 정보의 생성 및 교환에 기여한다. 다만, 각 참가자는 자신의 정보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 맴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자도서관은 각 기관이 상대방에 제공하기 원하는 문서를 제공하는 공간이며 각 기관은 전자도서관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에 관련된 토론포럼이 개설된다.
- Web 사이트는 지역입원청의 지역정책을 게시한다.
- 정보접근수단으로 인터넷주소록과 Extranets상에서 발행되는 문서에 대한 검색엔진이 제공된다.
- 주소록의 업데이트와 참조 및 관계기관에 관한 실무상의 정보(조직도, 기관지도 등)의 참조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를 제공한다.

19) 지역입원청은 국가와 의료보험조직 사이에 공익단체(groupements d'intérêt public)의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제 4 절 행정기관 인터넷사이트의 구축

1. 국가의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법인의 인터넷 사이트에 관한 1999년 훈령

1999년 10월 7일 수상은 인터넷 사이트의 창설 및 관리 그리고 그 사이트의 조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체계화하는 통첩을 발령하였다. 이 통첩은 사이트 관리에 있어서의 행정각부의 역할, 사이트의 내용과 구성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하고, 그 창설시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적용될 규칙을 정하고 있다.

(1) 행정각부의 정책

1) 행정각부의 정책의 필요성

행정각부의 현대화정책의 차원에서 각 행정각부는 국민을 위한 정보 및 서비스의 개선과 행정의 효율성의 증대를 위하여 인터넷분야에서의 발전을 및 발전우선순위를 정한다. 즉, 행정각부는 제공할 정보의 유형과 개발할 인터넷상의 서비스의 유형을 정한다. 행정각부는 중복을 피하고 정보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그의 감독하에 있는 지방행정기관 및 공공시설법인 사이의 조정에 유의하면서 각 부문의 데이터의 입력 및 제공을 조직하여야 한다. 그는 그의 감독하에 있는 지방행정기관 및 공공시설법인이 창설한 사이트에 대한 책임을 진다. 특히 그는 후속하는 사이트 창설시의 신고절차의 준수를 감독하고 정보체계의 안전성, 개인정보의 보호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정의 준수를 보장한다.

개발의 측, 우선순위 및 단계를 정하고,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고, 작업을 감독하고 청기적으로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행정각부에 담당위원회가 설치된다. 행정각부는 매년 그가 책임지는 사이트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개혁행정각부위원회(DIRE)에 제출하는 데, 각 사이트에의 접속회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사이트

행정각부는 여러 개의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다. 즉, 행정각부의 청탁을 중계하는 행정각부 사이트 및 활동분야에 관한 주제별 사이트들이 그것이다. 행정각부의 인터넷 사이트는 주제별 사이트의 목록과 그의 갑독하에 있는 지방행정기관 및 공공시설법인의 사이트의 목록을 게시하고 이들 사이의 연결을 조정한다.

행정각부는 그 부서의 이용자인 국민에 유익한 기본적인 공공정보와 서식이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각부의 사이트가 프랑스 행정 및 행정정보에의 인터넷에 의한 접근을 위한 접속창구사이트인 Admifrance, 중요한 법령을 제공하는 법률사이트인 Legifrance 및 정보화사회를 위한 정부행동계획의 실행조치에 관한 PAGSI에 연결되어야 한다. 행정각부의 사이트는 통신공간(전자우편함 또는 전자포럼)을 설치하고 행정과 국민 사이의 관계를 간소화하는 전자행정절차를 발전시켜야 한다.

(3)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및 공공시설법인의 사이트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의 사이트는 그의 권한에 속하는 지방공공정보를 제공하고 행정각부 사이트, Admifrance사이트, Legifrance사이트, PAGSI사이트 및 다른 국가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의 공공조직의 사이트에 연결된다.

이 사이트는 중복되는 부분 또는 불일치를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적 성격의 정보를 위하여 행정각부의 사이트와 연결된다. 특히 전자우편함을 통하여 이용자가 행정기관과 통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서식과 전자행정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의 서식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경우 지방에 특유한 서식을 제외하고는 그 동일한 서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계획의 수립으로부터 각 발전단계마다 그의 활동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접속수 및 이용자의 만족도 등에 관한 사이트의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 및 이 평가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의 공공시설법인에 의해 창설된 사이트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인 행정각부에 의해 정해진 한계내에서 이 통첩규정의 일부에 대하여 이름체정(*le nommage*) 등에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레지옹 또는 도 차원에서 행정각부사이트가 지역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행정각부사이트는 여러 국가기관 및 공공시설법인의 일부의 정보를 직접 또는 연결에 의해 모으는 것을 임무로 한다. 이러한 정보의 집합은 여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수단을 상호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사이트 또는 사이트의 여러 구성부분의 업데이트에 있어서 책임의 분배가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2. 공공인터넷사이트의 내용 및 구성에 관한 일반원칙

(1) 내용

1) 신뢰성(Fiabilité)

사이트를 창설한 기관 또는 조직체가 속하는 행정각부는 제공되는 정보의 일관성, 정확성 및 적절성을 책임진다. 그 행정각부는 사이트의 창설이후 모든 발전단계에서 이를 요구의 준수여부를 감시한다.

책임있는 행정각부는 사이트의 정기적인 업데이트 및 홈페이지의 일관성을 감시하고 이용자에게 최종 업데이트 날짜를 고지한다.

2) 접근성

사이트에의 접속의 간결성과 신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용자에 대하여 많이 보급되지 않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으면서 기술표준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트책임자는 일체의 정보와 문서가 모든 인터넷사용자에 의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파일형식(format)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의 표준에 합치하는 해결을 채택하여야 한다.

행정서식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HTML형식이 사용되어야 한다²⁰⁾. 행

20) <http://www.mtic.pn.gouv.fr/standards/referentiels/formulaires.shtml>

정보고서에 있어서는 HTML형식이 사용되는 파일형식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²¹⁾.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문서에 있어서는 적어도 가장 보편화된 파일형식 두 개를 제안하거나 특히 RTF형식을 제안하여야 한다.

페이지를 여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도표나 그림에 의해 어렵게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그림의 이용이 불가결한 경우에는 이 용자가 문서형식으로 보는 것과 그림으로 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제별색인과 검색엔진의 이용으로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에 있어서의 정보기술과 통신의 발전을 위한 행정각부간 기술지원단(MTIC)로부터 기술적 자문을 받아야 한다. 시장에서 입수할 수 있는 도구를 선호하여야 하지만 프랑스어로 질문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의 사용은 배제하여야 한다.

사이트책임자는 특히 영인,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등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인터넷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MTIC사이트²²⁾에 있는 이 주제에 관한 문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동일한 주소에서 프랑스어로 입수할 수 있는 WWW 콘소시움의 1단계 권고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포켓용컴퓨터 및 이동전화(GSM)에 의한 접속 등 접근방식의 다양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쌍방향통신(Interactivité)

정보통신기술은 행정과 이용자 사이의 접촉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편함과 전자포럼의 개설이 요구된다.

우편함은 이용자인 국민이 일주일 이내에 개인적인 답변을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문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만일 제기된 문제가 깊이 있는 검토를 요하는 경우 일주일 내에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21) http://www.mtic.pm.gouv.fr/standards/referentiels/rapports_en_ligne.shtml

22) <http://www.mtic.pm.gouv.fr/standards/accessibilite>

이 답신에서는 질문내용에 관한 답변의 예상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수준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필요한 인력과 기술을 갖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국가개혁및지방자치부의 사이트²³⁾에 있는 이에 필요한 방법론에 관한 문서를 참조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은 공공결정에 대한 시민의 새로운 참여방식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였다. 전자포럼이 그 예이다. 전자포럼의 개설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등에 관한 운영규칙을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 토론방이 개설된 사이트 이름의 고지의무, 토론의 주제 및 기간, 조정자의 존재, 토론결과의 이용, 보존 및 폐쇄방식 등.

4) 일반사이트와의 연결

행정각부간에 공통적인 사항에 관한 사이트가 다음과 같이 창설되었다 :

- Admifrance 사이트²⁴⁾ : 이 사이트는 일반공중에 대해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사이트에의 접속창구가 되며 프랑스 문서국(*la Documentation française*)에 의해 운영된다.
- Legifrance 사이트²⁵⁾ : 이 사이트는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내각사무처에 의해 운영된다.
- PAGSI 사이트²⁶⁾ : 이 사이트는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내각정보국에 의해 운영된다.

국가행정기관에 속하는 모든 사이트는 이 세 사이트와 연결되어야 하며 그 이름을 언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업데이트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꾀하는 것이 좋다 :

- 행정각부에 속하는 사이트가 일반 사이트에서 이미 제공되는 정보를 다시 제공하는 것.
-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 소속 행정각부의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다시 제공하는 것

23) <http://www.fonction-publique.gouv.fr>

24) <http://www.admifrance.gouv.fr>

25) <http://www.legifrance.gouv.fr>

26) <http://www.internet.gouv.fr>

공식보고서에 있어서는 인터넷상의 공식보고서의 무료배포에 관한 1998년 12월 17일 통첩을 참조하여야 한다.

행정각부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법률적 성격의 정보는 행정기관의 인터넷사이트에서의 법률정보의 제공에 관한 1998년 12월 17일 통첩에서 규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행정서식의 제공

행정서식의 인터넷상 제공에 관한 1999년 2월 2일 제99-68호 명령에 의해 행정절차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 사용이 필요하거나 국가의 행정기관 또는 행정공공시설법인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사용이 필요한 서식은 Admifrance사이트 또는 그 목록이 수상의 명령에 의해 정해진 다른 공공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이를 서식은 그 내용에 있어서 행정간소화에 관한 1998년 12월 2일 제98-1083호 명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문서간소화위원회(COSA)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된 서식과 동일하여야 한다.

수상의 명령에 의해 그 자격이 부여된 사이트는 그 자격을 언급하고 상기 1998년 12월 2일 제99-68호 명령에 따라 다음 문구를 게시하여야 한다 : “국가의 행정기관 및 행정공공시설법인은 이 사이트상에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로부터 인쇄된 서식을 사용하여 행해진 신청을 인터넷상의 정보와 비교하여 어떠한 변경도 가해지지 않은 서식인 한 검토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 Admifrance사이트와의 연결이 모든 공공사이트상의 서식을 위한 페이지의 상단에 표시되어야 한다.

행정각부는 그의 권한내에 있는 행정절차의 실현에 필요한 서식의 작성, 업데이트 및 제공을 책임진다. 따라서, 행정각부는 이들 서식을 그의 국가사이트에서 제공한다.

이용자의 거주지가 어디이든지 이용자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각부는 그 자신의 사이트 이외의 모든 공공사이트(특히 그의 지방행정기관)가 연결에 의해 그가 공중에게 제공하는 서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서식을 등록하고 수청하며 Admifrance 사이트에 그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행정간소화위원회는 공공사이트상에서 제공되는 서식 및 행정절차에 대한 쌍방향지원기관의 전목록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행정각부가 서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행정각부가 서식을 제공할 때까지 위원회에 의해 사전에 등록된 서식을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지방행정기관은 그 자신의 사이트에 국가차원에서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하면서 설계된 행정절차에 대한 지원, 쌍방향서비스 또는 전자행정절차의 형식하에 국민에게 특별한 보다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한 서비스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들 행정서비스의 실현은 그가 속하는 행정각부에 의해 청해진 편집정책에 합치하여야 한다.

국가지방행정기관은 국가차원에서 서식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들 서식이 지방법규에 따른 절차에 관한 것인 경우에만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차원에서 제공되는 서식은 1999년 2월 2일 명령의 삼기규정의 적용에 의해 전 국의 지방행정기관에 의해 수용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지방행정기관에 속하는 사이트에 대한 수상의 명령에 의한 자격부여는 현장에 구체화된 공통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이든지 국가절차의 지방에 의한 실현은 과도기적인 해결일 수밖에 없다.

6) 공공보고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1999년 1월 28일 통첩에 의해 프랑스문서국은 Admifrance 사이트에서 무료로 접속할 수 있는 공공보고서디지털도서관의 설치를 담당한다.

(2) 구 성

1) 이름제정(nommage)

국가기관에 의해 창설된 모든 인터넷사이트는 프랑스행정의 공식사이트로서 모호함이 없이 쉽게 찾아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gouv.fr”이라는 도메인네임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원칙에 대한 예외는 내각사무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법원의 사이트는 사법기관과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 사이의 분립을 표시하기 위하여 "justice.fr"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갖는다.

국가의 공공시설법인은 감독부처가 채택한 규칙에 따라 "gouv.fr"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지 ".fr"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름제정헌장을 만들지 않은 모든 행정각부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헌장은 행정각부 사이의 이 분야의 *plage*의 분배로부터 만들어진다. 이 헌장은 행정각부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의 사이트에 적용되는 규칙을 구체화한다. 이 헌장은 사람들이 그 성, 이름 및 행정주소를 아는 사이트 또는 공무원의 주소를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게 하는 일반규칙에 근거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이름제정헌장은 내각 정보국 및 MTIC에 통보된다. 행정각부는 이를 행하기 위하여 MTIC사이트에 있는 MTIC가 만든 헌장에 합치하여야 한다.

2) 언 어

홈페이지의 제작에 있어 프랑스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용어는 프랑스어의 확대에 관한 1996년 7월 3일 명령에 의해 규정된 요건하에 공보에 공표된 용어목록에 합치하여야 한다. 이 용어목록은 프랑스언어 원의 인터넷사이트²⁷⁾에서 제공된다.

3) 화면구성규약(Charte graphique)

인터넷에서 입수할 수 있는 공공정보의 시각적 통일성을 보장하고 인터넷이용자가 국가기관전체를 보다 잘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사이트는 각 화면의 좌측 상단에 검색어를 두어야 한다. 이 검색어의 디지털판은 PAGSI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gouv.fr"의 부여시 내각 정보국에 의해 제공된다.

행정각부는 그의 감독하에 속하는 모든 기관의 사이트에 대한 화면구성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27) <http://dgif.culture.fr>

(3) 안전성

해킹이 발천하고 있으므로 각 행정각부는 고위방어공무원 및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안전공무원의 책임하에 외부제공자에 의해 개설된 사이트를 포함하여 그의 통제하에 있는 사이트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들 조치는 사이트의 설계의 정의 및 이 사이트의 관리 및 그것이 포함하는 정보에의 접근에 관한 것이다.

국방부사무처에 속한 인터넷상 경보 및 지원조직(중앙정보체계안전국)이 국가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체계에 대한 천자적 침해에 대한 대응을 조정하는 것을 담당한다.

(4) 사생활보호

공공사이트는 그가 처리하게 되는 개인적 성격의 정보의 비밀성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개인정보는 공무원이나 이용자인 국민에 관한 정보이다.

항상적인 접속의 증거인 쿠키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피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쿠키의 사용은 이용자에게 행해지는 서비스를 상당히 개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쿠키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될 것
- 이용자에게 행정기관에 대한 접속의 대체방식이 제안될 것

정보처리, 파일 및 기본권에 관한 1978년 1월 6일 제78-17호 법률에 의해 누구든지 그에 관한 정보의 유통에 반대할 수 있다. 이용자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하여도 인정되는 이 권리는 사이트의 개설이전에 행사될 수도 있고, 사이트 개설후에도 행사될 수 있다. 자기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수정권도 동시에 인정된다.

3. 사이트 창설절차

행정각부는 '정보화사회를 위한 정부행동계획'의 실행과 직접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행정각부에 걸쳐 권한을 갖는 다음 기관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 국가개혁 행정각부위원회
- MTIC
- 내각 정보국
- 프랑스문서국
- 행정간소화위원회

이들 위원회는 자문의 임무를 가지며 이 자격에서 공공사이트의 책임자로부터 자문 또는 지원요청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중 '국가개혁 행정각부간위원회'는 인터넷사이트의 창설 및 그 활동의 감시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유일한 의무적인 협력상대이다.

(1) '국가개혁행정각부간위원회'에 대한 사이트의 신고

인터넷사이트를 창설하기 위하여는 DIRE에 천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는 사이트개설예정일로부터 적어도 15일전에 하여야 한다. 이 신고에는 사이트테스트에의 하이퍼텍스트에 의한 연결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고행정기관 또는 공공시설법인이 속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감독행정기관에 의해 청해진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신고절차는 사이트의 책임자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이 신고는 자동적으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재전송된다. 그렇지만 국가지방행정기관에 있어서 사이트의 개설은 특히 전국에 걸쳐 사이트의 동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의 조정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는 각 행정각부는 이들 기관에게 사이트의 개설방식에 관한 추가훈령을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DIRE에 신고하여야 한다.

DIRE 사이트에의 천자신고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통첩에 부속된 신고모델이 동일한 사이트에서 복사되거나 다운로드 될 수 있고, DIRE 또는 그 신고자가 속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천자복사 또는 우편에 의해 제출될 수 있다.

DIRE는 행정의 인터넷화에 관한 정책 천반과의 계획안의 일관성, 적용일반법규의 준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한다. 문제가 있는 경우 DIRE는 신고자의 소속부서 또는 감독부서에 문제를 제기한다.

신고는 DIRB에 의해 프랑스문서국, 내각정보국, 행정간소화위원회 및 MTIC에 동시에 그리고 자동적으로 전송된다. 이를 조직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DIRB는 이를 신고된 사이트의 책임자 및 필요한 경우 그의 소속 또는 감독부서에 통지한다.

인터넷사이트주소의 변경은 모두 상기방식에 따라 신고되어야 한다.

(2) 기타 사전절차

아래에서 제시되는 절차는 모두 사용될 서식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제공하는 PAGSI 사이트상에 기록되어 있다.

1) 대심재판소(tribunal de grande instance)에의 신고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 제43조에 따라 인터넷사이트는 초심재판소검사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는 방송통신기관에 속한다. 신고는 신고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대심재판소의 검사에게 한다.

2) 정보처리및기본권국가위원회(CNIL) 및 고등방송위원회(CSA)에의 신고

인터넷사이트는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정보처리, 파일 및 기본권에 관한 1978년 1월 6일 제78-17호 법률 제15조에 따라 이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모델에 따라 신고되어야 한다(법률 제26조의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의 신고모델). CNIL에의 신고서식은 CNIL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다.

CNIL에의 신고는 고등방송위원회에 이송된다.

3) 국가산업재산권청에의 등록신청

사이트의 명칭 또는 독특한 표시의 보호를 위하여 INPI에 마크의 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마크의 등록에 관한 규정은 지적재산권법전 제711-1 이하에서 정해진다.

이 절차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절차는 행정기관사이트 명칭의 사용에 있어서의 남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3) 서식의 인터넷상 제공의 자격인정

기존의 사이트에 있어서 각 행정각부는 DIRE에게 상기의 자격인정이 요구되는 그의 감독하에 있는 사이트의 목록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자격 인정신청은 상기의 신고와 동시에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DIRE는 행정간소화위원회 및 MTIC와 협의하면서 그 신청을 심사하여 프랑스문서국 및 관계 행정각부의 의견을 듣고 수상에게 자격인정결정을 제안한다.

(4) 공공인터넷사이트의 발전의 감독

DIRE는 상기 활동보고서의 틀을 정하고 행정각부에 이를 고지하고, MTIC, 내각 정보국, 프랑스문서국 및 행정간소화위원회와 협의하여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행정각부에 송부되고, 정보사회행정각부위원회에 의해 검토된다.

이 연간보고서를 준비하고 행정기관의 활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DIRE소속하에 공공인터넷사이트조사기관이 창설된다. 이 기관은 전향에서 언급된 기관들과 전문가, 행정간소화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선정되는 이용자대표를 포함한다. 의사일정과 관계있는 행정각부도 그 대표가 참여한다. 공공사이트의 책임자는 이 조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그의 활동을 보고할 수 있다.

행정각부는 이 통찰의 적용에 관한 어려움에 대하여 행정개혁각부위원회의 관인을 받아 수상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00년 9월 말 현재 2600개의 공공인터넷사이트(이중 1100개는 국가 기관 사이트임)가 개설되었다. 최근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이트가 많이 개설되었다.²⁸⁾ 국가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의 방문자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8년에 약 6백만명이었는데, 1999년에는 2천7백만명이었다.

사이트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개혁위원회(DIRE)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공공사이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²⁹⁾

28) 공공사이트명은 www.service-public.fr 참조.

29) www.fonction-publique.gouv.fr/tic. 1999년 10월 7일자 수상의 출령에 근거하여 행해진다.

최근에는 이용자의 필요에 응하는 사이트가 개설되고 있는데, 주제별 사이트가 개설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사이트³⁰⁾, 마약대응사이트³¹⁾, 협회사이트³²⁾ 등을 들 수 있다.

전자정부의 구현과 관계있는 중요한 공공기관 사이트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수상의 사이트³³⁾

2000년 6월 22일 수상비서실에 “정보사회”를 담당하는 팀을 강화하였다. 이 중 Schmidt-Pariset 위원이 정보사회와 관련이 있는 법률문제와 입법문제를 담당한다.

2) 정부행동계획 사이트³⁴⁾

이 사이트는 프랑스사회 정보화를 위한 정부행동계획의 사이트이다. 2000년 12월 4일 개설되었다. 이 사이트는 정부행동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해진 모든 활동과 정부행동계획의 현안을 게시한다.

3) 행정개혁부의 사이트³⁵⁾

이 사이트는 전자행정 구현을 조성하고 있는 행정개혁부의 사이트이다.

4) 행정각부대책반(MTIC) 사이트³⁶⁾

이 사이트는 행정각부대책반(MTIC)의 사이트이다.

5) 법령정보사이트³⁷⁾

이 사이트는 무료로 법령, 관보, 법적 문제에 관한 정보, 판례 등을 제공한다.

30) www.droitsdesjeunes.gouv.fr.

31) www.drogues.gouv.fr.

32) www.vie-associative.gouv.fr.

33) <http://www.premier-ministre.gouv.fr>

34) <http://www.internet.gouv.fr>

35) <http://www.fonction-publique.gouv.fr/>.

36) <http://www.mtic.pm.gouv.fr/>

37) <http://www.legifrance.gouv.fr/>

6) net-enterprises 사이트³⁸⁾

이 사이트는 기업이 인터넷으로 사회보호조직에 사회보험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기업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무료이며 임의적인 서비스이다.

7) 전자조세신고 사이트³⁹⁾

이 사이트는 기업이 부가가치세(TVA)를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지불하는 인터넷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이 업무는 전자문서교환(EDI) 또는 전자서식교환(EFI)에 의해 행해진다. 납세자는 이 둘 중의 하나의 방식만을 이용할 수 있다.

8) 기업행정절차센타(CFE) 사이트⁴⁰⁾

기업행정절차센타(CFE)(Décret 96-650 du 19 Juillet 1996 relatif aux centres de formalités des entreprises)는 1981년 창설되었는데, 한 곳에서 그리고 하나의 문서로 기업의 설립, 법적 지위의 변경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신고·신청 및 증빙서류에 대한 형식적 심사와 그 서류의 이송을 담당한다.

제 5 절 전자우편의 보급

'행정기관과 국민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용이하게 하여 행정기관간의 업무의 협의를 용이하게 하는 전자우편의 보급지침'이 수립되어 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전자우편의 보급은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1단계는 우편함을 설치하는 것이고, 제2단계는 이 우편함이 내부통신과 연결되어 행정기관이 전자우편에 의해 응답하고, 제3단계에서는 모든 행정기관에 우편함이 설치되어 국민이 담당 행정기관과 직접 통신을

38) <http://portail.net-entreprises.fr/>

39) <http://www.finances.gouv.fr/DGI/tva/telepro/>

40) <http://194.254.38.72/CFBCompJSP/MissionCPE.htm>.

할 수 있게 되고, 제4단계에서는 수년내에 전자우편이 전화나 우편과 같이 보편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우편은 전화, 우편, 미니텔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를 전통적인 통신수단과 함께 국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통신수단으로 사용된다.

1999년에 행정각부의 인터넷 사이트에 도착한 전자우편은 30만건에 이르렀다.

제 6 절 인터넷민원 사이트 구축 : 종합행정 서비스사이트⁴¹⁾

이 사이트는 종합행정민원정보 및 상담 사이트인데, 이전의 admifrance.gouv.fr이 확대개편된 것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모든 행정분야의 민원정보가 제공되고 상담이 가능하며 관련 사이트의 홈페이지가 나와 있고 링크되어 있다.

또한, 행정서식이 개인에게 필요한 행정서식과 기업에게 필요한 행정서식으로 분류되어 제공되고 있다.

제 7 절 국민의 정보접근 증대(정보격차해소)

국민이 인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체국에 인터넷을 설치하였다(1000개소 정도), 그리고, 도서관 및 행정기관 등의 공적 시설에도 인터넷을 설치하고 있다.

2000년 3월 3일 장애인(주로 앵인과 시력이 나쁜 사람)의 인터넷에의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⁴²⁾.

조스뱅 총리는 2001년에는 보통의 전화선에 의해 누구든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하였다(2001년 1월 11일 연설).

국가정보화에 있어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통하여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에 있어 지역간 평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행정각부는 각 분야에서 낙후된 지역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고 국토청비 및 환경부는 이를 지원한다.

41) <http://www.service-public.fr>

42) 1999년 10월 7일자 수상의 훈령. 자세한 것은 MTIC 사이트 참조.

제 8 절 예산조치

컴퓨터와 정보통신부문에서의 행정의 현대화안을 위한 기금이 2000년에도 1999년에서와 같이 2천백만 프랑이 배정되었다.⁴³⁾

정보통신을 위한 예산이 1998년과 2001년 사이에 45억 프랑에서 56억 프랑으로 늘었다.(25% 증가)

43) 자세한 것은 La circulaire PIM l'an 2000, les contacts Annexe I 참조

제 5 장 전자정부 추진체계

제 1 절 추진주체

프랑스에서는 현 수상인 죄스팽 총리가 전자정부의 구현 등 프랑스 사회의 정보화를 주도하고 있다. 1998년 수상에 의해 발표된 천술한 정부 행동계획이 정보화의 지침이 되고 있다.

제 2 절 조정주체 및 통합조직

국가개혁부장관과 국가개혁행정각부위원회(DIRE)(*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 à la réforme de l'Etat*)가 정보사회를 위한 정부행동계획 중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정책집행을 조정하고 있다. 국가개혁행정각부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전자행정의 진전상황을 행정개혁부 인터넷사이트⁴⁴⁾에 게시한다. 그 이외에 전자정부의 구현과 관련이 있는 여러 행정기관 및 위원회가 있다.

1. 국가개혁행정각부위원회(DIRE)(*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 à la réforme de l'Etat*)

국가개혁행정각부위원회는 공직·국가개혁및지방자치장관에 소속된 행정기관이다.⁴⁵⁾이 기관의 임무의 하나는 행정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있다. 이 기관은 특히 정부정보화사회진입계획의 결정사항을 행정각부가 실행하는 것을 조정한다.

2. 행정간소화위원회(COSA)(*La Commission pour les Simplification Administratives*)

이 위원회는 1998년 12월 2일 레크레에 의해 창설되었다.

이 위원회는 결차간소화위원회(COSIFORM, *Commission pour la*

44) www.fonction-publique.gouv.fr/tic

45) www.fonction-publique.gouv.fr/dire.

Simplification des Formalités)를 이어 받은 조직인데,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담당하며 특히 전자민원에 관한 정부간 지침(un schéma directeur interministériel de téléprocédures)을 작성한다. 이 위원회는 또한 이전에 행정서식등록센타(CERFA)(Centre d'enregistrement (et de révision) de formulaires administratifs)에 맡겨졌던 임무를 담당한다(2000년 3월 6일 수상의 통첩).

3. 국가개혁행정협의회(CIRE)(Comité interministériel pour(à) la Réforme de l'Etat)

2000년 10월 12일 개최된 CIRE는 수상의 주재하에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논의에서 결정된 것은 다음과 같다. : 12월 1일 이전에 매년 6천만건 발급되는 주민등록표(les fiches d'état civil)는 폐지될 것이다. 영수증(quittances)과 계산서(factures)의 발행이 그의 주소를 증명하기 위하여는 더 이상 필요없게 될 것이다. 10월 23일 개설된 service-public 사이트가 이용자에게 공공웹에의 유일한 출입구가 되고 이 사이트에서 2001년부터는 200건 이상의 전자민원이 제공될 것이다.⁴⁶⁾

4. 정보화사회를 위한 행정각부위원회(CISI)(Comité Interministériel pour la Société de l'Information)

이 위원회는 정부사회를 위한 정부행동계획에서 예정되어 있는 활동의 진행을 체크하고, 1998년 이후에 조직되는 공청회에서 수립되는 반응, 문제 및 제안을 검토하고 정보사회와 활동주체들에 의해 제시된 제안들을 국가의 집행활동에 고려하는 것을 체크한다.

46) 결정 전문 공무원및국가개혁부 사이트 참조. 이에 관한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 : 1) 2000년 3월 조스탱 총리에게 제출된 국사원 위원인 Bruno Lasserre의 보고서, "l'Etat et l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 vers une administration à accès pluriel" 2) 1999년 11월 제출된 Dieudonne mandelkem의 보고서 "Diffusion des données publiques et révolution numérique" 3) 2000년 7월 10일 CISI 회의 참조.

이 위원회는 프랑스의 정보사회로의 진입과 관련된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발전으로부터 청기적으로 교훈을 끌어내고 정보사회에 관한 국제적인 발전을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행동계획에 대한 수정을 제안한다.

이 위원회는 일년에 두 번 이상 열릴 것이며 사무국은 정부비서실에 둔다.

5. 행정서식등록센타(CERFA)(Centre d'enregistrement(et de révision) de formulaires administratifs)

이 조직은 1998년 설치되었는데 서식의 천자화를 주도한다.

6. 정보기술전략위원회(CSTI)(conseil stratégique d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이 위원회는 2000년 11월 9일의 데크雷에 의해 3년의 기한으로 수상 소속하에 창설되었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정보기술부문에서의 혁신, 연구 및 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천략적 선택을 명확히 한다. ②수상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를 검토하고 그의 권한있는 부문에 관하여 수상에게 모든 제안을 한다. ③정보화사회를 위한 정부의 활동계획과 그에 대응하는 공동체 계획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활동의 실행과 평가를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 ④정보기술과 디지털경제(l'économie numérique)부문에 있어서 교육의 발전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또한, 유럽이사회의 요청에 의해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공적 부문에서의 무료소프트웨어(logiciels libres)의 사용현황(장래 2년까지의 전망 포함)을 조사하고 있다.

7. 행정정보통신기술원(ATICA)

행정정보통신기술원(ATICA)이 2001년 8월 22일 제2001-737호 수상의 명령에 의해 이 명령의 공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상의 감독하에

창설되는 것으로 되었다(제1조). 이 원은 1998년 8월 27일 제98-751호 명령에 의해 창설된 행정정보통신기술발전을 위한 기술지원행정각부대책반 (Mission interministerielle de soutien technique pour le développement d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dans l'administration)⁴⁷⁾을 대체하는 기관이다(제11조).

이 원은 정보통신시설 및 프로그램분야에 있어서 공공서비스의 공통의 필요를 찾아낸다. 이 원은 기술적 해결 및 표준의 분야에서 제안을 조사 한다. 이 지위에서 이 원은 납품업자에게 의견을 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직업을 포함하는 모임에 참석한다. 이 원은 수상 또는 장관의 요청에 의해 특정부문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를 보장하는 것을 담당한다(제2조).

이 원은 기술표준의 조화에 유의하고, 공통기술 référentiels을 제안한다. 정보체계사이의 상호작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 또는 표준 profils 및 référentiels을 포함하는 공통틀의 구성을 위한 권고를 발한다. 이 권고는 이 원의 인터넷사이트에 공개되고 국가개혁행정각부위원회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된다. 이 원은 행정기관이 무료프로그램과 공개된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progiciels의 사용을 용이하게 한다(제3조).

이 원은 행정기관의 기술계획안의 구상과 발전을 위해 행정기관을 지원하고, 이들 계획의 조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능력과 지식의 이전을 촉진하여 부답서의 모델을 작성한다.

이 원은 국가행정기관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개혁담당장관에 의해 실행되는 정책을 지원한다. 특히 국가개혁행정각부위원회와 함께 국가공무원의 이 기술에 대한 교육활동에 참가하고

47) '행정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위한 기술지원을 위한 행정각부대책반'(MTIC)(Mission interministerielle de soutien technique pour le développement d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dans l'administration)은 1998년 8월 27일 창설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

- 1) 수상에 의해 위임된 행정각부에 걸친 계획안의 담당
- 2) 행정기관의 기술계획안의 기획 및 발전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지원
- 3) 기술표준의 조화를 도모하고 공동의 기술준거를 제안(안전문제의 해결 등)
- 4) 시설과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공동의 필요의 도출
- 5) 수상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대한 평가의 실시
- 6) 정보통신기술분야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에 속하는 작업을 위한 국제조직에의 참가

특히 기술적 능력 및 시설에 대한 통제력의 발전에 기여한다. 기술교육의 내용, 직업시험 및 정보통신체계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모집을 위한 시험프로그램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제4조).

이 원은 레지옹소속의 신청보통신기술담당팀의 맘을 지원한다(제5조).

이 원은 수상에 의해 그에게 밟겨진 여러 부처에 걸친 계획안을 담당한다(제6조).

이 원은 행정기관에게 기술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공중에게 특히 그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행정의 기술적 선택에 대하여 고지한다(제7조).

이 원은 행정기관내에서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여러 팀으로 구성된 사업에 전문가로서 참여할 수 있다. 이 원은 행정각부간의 협력활동에 참여하고 외국의 행정기관 및 유럽공동체 위원회의 기관과 그의 권리에 속하는 문제에 관하여 전문능력의 교환을 촉진할 수 있다(제8조).

위에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원은 특히 다음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정보체계의 안전성
- 행정기관에 의해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보유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 국가행정기관의 정보체계사이에 있어서의 호환성 및 국가행정기관의 정보체계와 이용자 또는 기타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정보체계 사이의 호환성
- 공중에 대한 전자서비스의 단순성
- 네티즌 특히 장애인, 행인,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 사무처, 행정간소화위원회, 국가과학행정각부위원회 및 관계부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제9조).

이 원의 원장은 수상에 의해 임명된다. 이 원의 원장은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의 각자의 능력에 비추어 선정된 사람으로 구성되는 이 원을 지원하는 과학위원회를 주재한다. 이 위원회는 기술상태와 예견되는 발전에 대한 평가를 행한다. 이 위원회 위원은 수상에 의해 임명된다.

수상에 의해 구성되고, 행정각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보장법전에 의해 규율되는 조직체의 대표가 참가하는 지침위원회가 이 원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이 위원회는 프로그램과 정보체계의 호환성의 분야 등에서 행해야 할 조치에 대하여 권고를 발할 수 있다(제10조).

8. 중앙정보시스템안전국(SCSSI)

정보시스템안전국은 국방부 사무처(SGDN)에 속하는 기관인데 정보통신기술 및 인터넷 분야에서의 공권력에 의해 정해지는 안전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주지시키는 것을 임무로 한다.⁴⁸⁾

제 3 절 집행주체

정보화계획의 집행주체는 행정각부 및 각 행정기관이다.

행정각부는 1998년 상반기 중 정보화사회에 관한 정부행동계획에의 참여에 관한 종합문서를 작성·공개하였다. 이 문서에는 특히 행정각부에서의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내부행정의 현대화와 이용자, 시민 및 기업과의 그의 관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각부는 공공정보의 전자화와 인터넷에서의 유통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인터넷에 의한 전자행정서비스의 실시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내부 전자우편함의 설치계획과 및 행정각부 우편함과의 상호연결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사이의 통신망을 통한 연결이 확대되어야 한다.

행정각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현대화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행정각부장관 밑에 정보화사회담당관이 임명된다. 정보화사회담당관은 정부행동계획의 집행의 조정을 담당하고, 정부행동계획의 집행을 채크하고 정보화사회행정각부위원회의 개최를 준비한다.

48) www.scssi.gouv.fr.

제 6 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랑스에서는 일찍이 미니텔(전화방식에 의한 간편한 컴퓨터정보접근 및 거래장치)이라는 정보통신네트워크가 구축되었고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었다. 정부는 미니텔에 구축되었던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로 변경·이용하고 있다.

미니텔은 전화번호의 조회, 열차, 호텔등 여행, 연주회 등의 여가에 관한 정보취득과 그의 예약이 가능한 장치이다. 요금징수는 전화요금과 함께 징수된다. 미니텔에 의한 정보 및 원격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인터넷의 보급에 대한 필요성이 적었고, 그리하여 미니텔은 오히려 인터넷의 보급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프랑스는 미니텔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

제 7 장 전자행정구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동향

프랑스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전자행정구현을 위한 일반적인 성격의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의 기반이 되는 전자서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현재 정보화사회에 관한 법률안(*Projet de loi sur la société de l'information*)이 의회에서 심리 중에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명령(독립명령)이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전자행정구현과 관련한 법률 제정·개정의 필요성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다.

프랑스에서 정부의 전자화는 행정부 행정의 전자화를 중심으로 행하여지고 있고 또한, 행정정보망의 설치, 행정정보화촉진체계의 구축, 행정서식 전자화 등 행정조직의 전자화 및 대국민 전자행정서비스를 위한 준비작업이 중심이 되고 있으므로 아직 법령정비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 행정조직 내부의 전자화에 관한 것은 훈령이나 청탁선언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대국민 전자행정서비스가 시범 실시되고 있고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가 행해지고 있다. 다만, 대국민문서행정서비스를 전제로 하여 제정된 법령을 전자행정서비스도 규율할 수 있는 법령으로 정비함에 있어서 전자행정서비스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지 않고, 그 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관계되는 개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방식은 전자행정서비스의 실현과 함께 제기되는 법적 문제는 아직 예측불가능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전자행정서비스의 제공방식 및 절차의 발전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자행정서비스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보는 데 기인한다.

제 1 절 전자행정의 안전성 보장

1. 전자서명법과 동법 시행령의 제정

2000년 3월 13일 정보기술에의 입증법의 적용 및 전자서명에 관한 법률 제2000-230호(*loi du 13 mars 2000 n° 2000-230 "portant adapta-*

tion du droit de la preuve aux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relative à la signature électronique", JO 14 mars 2000)(이하 "전자서명법"이라 한다)이 민법을 개정하는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프랑스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의 전자문서에 대한 증명력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전자문서는 작성자가 적절하게 식별될 수 있고 그 문서가 그 무결성(l'intégrité)을 보장하는 성질의 조건하에서 작성되고 보존된다는 유보하에서 종이문서와 같이 증거가 될 수 있고⁴⁹⁾ 또한,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같은 증명력을 갖는다(민법전 제1316-3조(전자서명법 제3조)).

법률문서의 서명이 전자서명인 경우에 그것은 부착되는 행위와의 그의 연결을 보장하는 신뢰할 수 있는 식별방식에 의한다. 이 방식의 신뢰성은, 전자서명이 국가원의 심사를 받은 명령에 의해 정해진 조건하에서 행해진 때 서명인의 동일성이 보장되고 문서의 진정성이 보장되므로 반대의 입증이 되지 않는 한, 추정된다(민법전 제1316-4조(전자서명법 제4조)).

2001년 3월 30일 민법전 제1316-4조의 적용을 위해 제정된 전자서명에 관한 명령 제2001-272호(Décret no 2001-272 du 30 mars 2001 pris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1316-4 du code civil et relatif à la signature électronique)(이하 "전자서명법 시행령"이라 한다)이 공포되었다.⁵⁰⁾ 전자서명법 시행령은 전자서명의 생성, 서명자의 신원확인 및 행위의 무결성의 보증조건 등을 정하고 있다. 전자서명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전자서명법 시행령은 우선 전자서명에 관한 다음과 같은 주요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제1조) : 전자서명(Signature électronique), 안전전자서명(Signature électronique sécurisée), 서명자(Signataire), 전자서명생성정보(Données de création de signature électronique), 전자서명생성장치(Dispositif de création de signature électronique),

49) 민법전 제1316-1조(전자서명법 제1조 제3항)

50) J.O. Numéro 77 du 31 Mars 2001 page 5070.

안전전자서명생성장치(Dispositif sécurisé de création de signature électronique), 전자서명확인정보(Données de vérification de signature électronique), 전자서명확인장치(Dispositif de vérification de signature électronique), 전자인증서(Certificat électronique), 공인된 전자인증서(Certificat électronique qualifié),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Prestataire de services de certification électronique),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의 인증(Qualification des prestataires de services de certification électronique)

②전자서명방식의 신뢰성 : 전자서명방식의 신뢰성은 안전성이 보장되고 이 방식이 전자서명생성장치에 의해 행해진 전자서명을 실행하고, 이 서명의 확인이 공인된 전자인증서의 사용에 근거하는 때에 반대의 입증이 없는 한 추정된다(제2조).

③안전전자서명생성장치(Des dispositifs sécurisés de création de signature électronique)의 요건 : 전자서명생성장치는 제3조의 I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제3조의 II에 규정된 요건하에서 이들 요건에 합치한다고 인정될 경우에 안전성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제3조).

제3조의 I에 규정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기술적 수단 및 적정절차에 의해 전자서명생성정보가 a) 한 번 이상 생성될 수 없고, 그의 비밀성이 보장된다는 것, b) 추론에 의해 발견될 수 없고, 전자서명이 일체의 변조로부터 보호받을 것, c) 제3자에 의한 일체의 사용으로부터 서명자에 의해 만족스럽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을 보증할 것
2. 서명될 문서의 내용에 어떠한 변경도 가져오지 않고 그 서명자가 서명전에 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

제3조의 II에 규정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 전자서명생성장치는 다음의 중 하나에 의해 I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정보체계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수상소속기관에 의해, 이들 기관에 의해 인정된 조직체에 의해 수상의 명령에 따라 실행된 평가후에, 이들 기관에 의한 합치인증서의 교부는 공표된다.

2. 또는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에 의해 이를 위하여 지정된 조직체에 의해, 제3조의 II의 1.에 규정된 평가 및 인증절차실행의 통제는 수상소속 인증지도위원회(un comité directeur de la certification)가 행한다(제4조).

④전자서명확인장치(*Des dispositifs de vérification de signature électronique*) : 전자서명확인장치는 다음의 요건에 응하는 경우에 평가 후 제4조에 언급된 명령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a) 사용되는 전자서명확인정보는 확인자(*vérificateur*)라 불리는, 장치를 실행하는 자가 알았던 것이어야 한다.
- b) 전자서명확인요건은 전자서명의 정확성을 보증하고 이 확인의 결과는 변조됨이 없이 확인자가 알도록 하여야 한다.
- c) 확인자는 필요한 경우 서명된 정보의 내용을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d) 전자서명확인시에 사용된 전자인증서의 효력요건 및 기간은 변조됨이 없이 확인자가 알도록 하여야 한다.
- e) 서명자의 신원은 변조됨이 없이 확인자가 알도록 하여야 한다.
- f) 가명을 사용한 경우 그 가명의 사용을 확인자가 명확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 g) 전자서명확인요건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경은 탐지될 수 있어야 한다.

⑤공인된 전자서명인증서(*Des certificats électroniques qualifiés*) : 전자인증서는 제6조 I에 열거된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제6조 II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비스제공자에 의해 교부된 경우에만 공인된 전자인증서가 된다.

- 제6조 I에 열거된 요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 a) 전자인증서가 공인된 전자인증서로서 교부된다는 것을 지시하는 문구
 - b)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의 신원 및 그것이 설립된 국가
 - c) 서명자의 이름 또는 가명, 다만, 가명은 가명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 d) 경우에 따라서 전자인증서의 사용처에 따른 서명자의 자격의 표시
- e)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응하는 전자서명확인정보
- f) 전자인증서효력의 발생시 및 종료기간의 표시
- g) 전자인증서의 확인코드
- h) 전자인증서를 교부하는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의 안전성이 보장된 전자서명
- i) 경우에 따라서 이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는 거래의 최대금액 등 전자인증서의 사용조건.

제6조 II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⑥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des prestataires de services de certification électronique*) :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제6조 II).

- a) 그것이 제공하는 전자인증서비스의 신뢰성을 가질 것.
- b) 전자인증서가 교부되는 자를 위하여 신청을 한 자의 전자인증서를 대조하는 명부서비스의 운영을 보장할 것.
- c) 그 전자인증서가 교부되었던 자가 기간의 제한없이 확실하게 취소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의 운영을 보장할 것.
- d) 전자인증서의 교부일시와 취소일시가 정확하게 정해질 수 있도록 할 것
- e) 전자인증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지식, 경험과 자격을 가진 직원을 고용할 것.
- f) 적절한 안전절차를 적용할 것.
- g) 그가 보장하는 직무의 기술상 안전과 암호상 안전을 보증하는 시스템 및 제품을 사용할 것.
- h) 전자인증서의 위변조를 예방하기에 적합한 일체의 조치를 취할 것.
- i) 그가 서명자에게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들의 생성 시의 이들 정보의 비밀을 보증하고 이들 정보를 보존하거나 재생산하는 것을 자체할 것.
- j) 전자서명생성정보와 전자서명확인정보가 동시에 제공될 경우에 생성정보가 확인정보에 상충하도록 할 것.

- k) 재판상 전자인증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하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전자인증서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필요한 경우 전자적 형식으로 보존할 것.
- l) 다음 사항을 보증하는 전자인증서보존시스템을 사용할 것.
 - 정보를 입력하고 변경하는 권한이 제공자에 의해 이를 위하여 허가된 자에게만 주어질 것
 - 전자인증서에 대한 공증의 접근은 인증서보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
 - 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태롭게 할 성질의 변경은 모두 탐지될 수 있을 것.
- m) 한편으로 전자인증서가 교부되는 자의 신원을 그에게 공식신원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확인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자가 제시하는 자격을 확인하고, 이 신원과 이 자격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문서의 특징 및 참조사항을 보존할 것.
- n) 전자인증서를 교부할 때에 그가 보유하는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과 그렇게 신원확인된 서명자가 이 인증서에 포함된 전자서명확인정보에 상응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것.
- o) 전자인증서비스제공계약의 체결전에 전자인증서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다음사항을 통지할 것.
 - 인증서 사용방식과 사용조건
 - 그가 제7조에 언급된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의 의도적인 인증과정에 종속되거나 종속되지 아니하는 사실
 - 분쟁의 불복방식과 해결방식
- p) 전자인증서에 근거하는 자에 대한 그에게 유용한 o)에서 규정된 정보의 요소들을 제공하는 것.

제6조에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는 공인된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가 될 수 있다(제7조). 이 공인은 산업담당장관의 명령에 의해 이를 위하여 지정된 심리절차에 의해 교부되는 자격을 받은 조직체에 의해 교부된다. 그 조직체의 자격부여절차 및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의 평가 및 공인절차는 천황에 규정된 산업담당장관의 명령에 의해 정해진다.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의 통제는 수상의 명령에 의해 지정되고 정보시스템의 안전을 담당하는 수상소속기관의 감독하에 활동하는 공적 조직체에 의해 행해진다.(제9조 II).

2. 암호화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화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128비트까지의 암호화키의 사용이 최근 자유화되었다⁵¹⁾.

3. 기타 안전장치

전자행정에 있어 발신 및 수신시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전자문서의 발신 및 수신을 확인하는 서비스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행위에 있어서 내용의 인증을 위하여 전자공증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4. 안전담당기관

프랑스에서 정보통신의 안전은 국방부의 권한에 속한다. 비밀정보 등 민감한 정보의 교환에 있어서 사용되는 도구의 평가는 국방부 사무처의 중앙정보체계안전국(SCSSI)이 담당한다. 지정된 비밀정보의 교환에 사용되는 도구는 이 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국은 사천안전성 평가 등에 있어서 행정기관에 대한 자문을 행한다.

또한 이 안전국은 국가기관의 정보체계에 대한 공격에 대한 대응을 조정하는 것을 담당한다.

제 2 절 전자행정절차

1. 문서작성표준

전자행정을 위하여 우선 필요한 것이 문서작성표준을 정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여러 유럽국가에 의해 채택된 유럽연합유럽위원회가 1995년 9

51) 1999년 3월 17일 페코레 : 1999년 3월 18일 아페페.

월부터 권고한 EDIFACT-ONU(ref. ISO 7372와 ISO9735) 규범을 채택하였다⁵²⁾. 이 통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기관은 이 유럽규범에 의해 작성된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서를 사용한다. 만일 그러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은 기존의 문서의 재작성을 제안하거나 EDIFACT에 대응하는 새로운 문서의 창설을 제안한다. 이들 새로운 또는 수정된 문서는 Edifrance협회에 의해 촉진되는 전자문서교환발전그룹의 차원에서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해진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특정 파일형식의 EDIFACT-ONU 규범으로의 이전은 계획에 따라 시도된다.

행정서식의 등록 및 수정령(CERFA)과 COSIFORM이 Edifeance 협회와 협력하여 EDIFACT규범에 의한 행정필요의 충족을 보장한다.

2. 전자서식에 관한 명령

1998년부터 서식을 전자화하는 작업을 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행정서식등록센타(CERFA)가 창설되었다.

행정서식의 인터넷 제공에 관한 1999년 2월 2일 명령⁵³⁾, 2000년 6월 16일 동 명령 시행규칙⁵⁴⁾이 제정되었다.

1999년 명령에 의하면 ①국가의 행정기관 또는 행정공공시설법인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Admifrance"라는 인터넷 사이트 및 기타 공공사이트를 통하여 무료로 제공된다(제1조). ②전자행정서식을 제공하는 사이트의 목록은 수상의 명령에 의해 정해진다(제2조). ③Admifrance 사이트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공중에게 제공되는 전자서식을 update 해야한다(제3조). ④국가의 행정기관 및 행정공공시설법인은 이 명령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전자서식을 사용하여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서식이 인터넷상의 서식과 동일한 한 그 서

52) 행정기관에 의한 EDIFACT-ONU규범의 사용에 관한 1997년 1월 16일 통첩.

53) Le décret du 2 février 1999 n° 99-68 relatif à la mise en ligne des formulaires administratifs - Journal officiel du 4 février 1999.

54) L'arrêté du 16 juin 2000 portant habilitation de sites internet des services de l'Etat à diffuser des formulaires administratifs - Journal officiel du 18 juin 2000.

식에 의한 신청을 접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제4조). ⑤이 명령이 시행된 이후 새롭게 만들어졌거나 변경된 서식은 제1조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지 않는 한 사용될 수 없다(제5조).

1999년 12월 31일의 인터넷상에서의 행정절차에 대한 지원에 관한 훈령은 2000년 여름까지 행정각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에 필요한 서식 전체를 당해 행정각부의 사이트에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0년 2월 29일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였거나 행하고자 하는 활동 목록을 국가개혁행정각부위원회의 관인을 받아 수상에게 제출할 것을 명하고 있다.

상기 1999년 12월 31일의 훈령에 부속된 현장⁵⁵⁾에 의하면 행정절차의 침행에 쌍방향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행정서식⁵⁶⁾만을 제공하는 행정기관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서식은 CERFA에 의해 승인되었거나 아니거나 그 서식이 사용되는 절차를 담당하는 행정각부 사이트와 프랑스행정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admifrance.gouv.fr에서 제공된다. 개별행정기관은 국가사이트와 링크하여 이를 서식을 사용하고 이를 서식을 스스로 제공하는 것을 삼가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서식의 지방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다만, 국가 행정절차에 적합한 행정각부 서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작성된 서식이 제공될 수 있다. 이들 서식은 국가의 모든 행정기관에 의해 수용되고 그 개별행정기관은 그가 속한 중앙행정기관에게 국가행정절차에 적합한 서식의 제공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들 서식에 관한 정보는 행정각부 사이트와 admifrance.gouv.fr상에서 제공된다. 어떤 서식이 문제의 절차의 침행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사이트에 등록된 때에는 지역적으로 작성된 서식은 이 국가사이트에의 링크에 의해 대체된다.

또한, 개별행정기관은 작성된 서식이 컴퓨터에 입력된 것을 그 소속중앙행정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서식을 전국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55) 행정서식 및 전자행정절차의 국가기관 및 국가공공시설법인의 인터넷사이트상의 제 공현장.

56) 여기에서 행정서식이라 함은 정보청구서, 설령서, 제출할 입증서류의 목록을 의미한다.

지방에 고유한 행정절차 또는 지방적 기준이 적용되는 절차에 있어서는 개별 행정기관은 필요한 서식을 창설할 수 있지만, 그 서식이 적용되는 지역적 범위를 정하고 중앙행정기관에게 그의 창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26개 국가기관 인터넷사이트(7개 중앙행정 사이트와 19개 지방 분권 행정기관 사이트)에서 행정서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존하는 행정서식의 약 36%(600건의 서식, 사인에게 가장 많이 쓰이는 서식 전체)가 2000 9월 현재 인터넷에 제공되고 있다.⁵⁷⁾

3. 전자민원절차 등 쌍방향서비스

쌍방향서비스라 함은 행정절차에 관한 개인적인⁵⁸⁾ 서비스 즉, 수령증, 신청서류에 대한 번호의 부여, 면담일의 지정등과 전자행정절차를 말한다. 상기 1999년 12월 31일 통첩에 부속된 현장은 쌍방향서비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은 문제의 절차의 쌍방향제공에 필요한 요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를 제외하고는 국가차원에서 정해진 서식이 요구하는 것에 추가하여 어떠한 정보요구서, 입증서류 또는 일체의 조건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행정기관은 절차의 쌍방향제공에 필요한 것 이외에 어떠한 연결증명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행정기관은 문제의 행정절차의 집행에 있어서 국가차원에서 만들어진 모델서식을 이용자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인 연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정 행정기관이 쌍방향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투자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행정기관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서비스의 일반적 운영이 극히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 조건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설계와 기술의 선택·이전에 있어서 행정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는 행정각부팀(MTIC)의 자문을 받아야 하고 개발된 프로그램과 전자화된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은

57) www.cerfa.gouv.fr.

58) 개인정보의 처리를 포함하는 서비스는 사전에 국가정보처리및기본권위원회(CNIL)에 사전신고하여야 한다.

이들 서비스의 존재가 행정각부 사이트와 admifrance.gouv.fr상에 고지될 수 있도록 그 존재에 대해 보고를 받아야 한다.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1978년 법률(LOI n° 78-753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은 다음과 같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⁵⁹⁾ 즉, 신고 또는 신청을 하기 위하여 특정기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국민은 모두 문서의 우송뿐만 아니라 발송일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에 의해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그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공공거래법전에 의해 규율되는 절차와 신청인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의 적용방식에 관한 사항은 국사원의 동의를 받은 명령에 의해 정해진다.

전자민원은 다음과 같은 네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1단계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서식을 입수하여 출력후 종이문서에 작성 사용, 2단계는 전자서식을 입수하여 컴퓨터 화면에서 작성, 3단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출력, 4단계는 전단계에서 Edifact⁶⁰⁾ 서식 사용(정보통신망 이용).

LORENTZ보고서에 의하면 1998년까지 행정각부는 전자민원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1999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세무신고, 사회급여, 조달행정에서 시범실시하고 이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전자행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되는 분야는 사회보장분야이다. PAGSI도 사회보장분야에서의 신고 및 사회비분담금(cotisations)의 납부가 우선적으로 전자화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된 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59) 제14조.

60) Edifact는 행정, 상업 및 운송을 위한 EDI를 말한다.

- URSSAF, ASSEDIC 및 보충퇴직기관과 관련이 있는 사회보장분 담금의 통일된 신고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있어서 1998년부터 미니텔 및 전자문서교환(EDI)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 채용의 단일신고(DUE)가 일반화되었다(1998년 4월 1일 예크레).
- 사회정보의 연간신고(DADS)와 보충퇴직금고에 대한 연간개인별신 고(DADS-CRC)를 통합하는 연간신고가 실시되었다.
- 근로자의 개인별 사회보장분담금을 계산해줌으로써 지불에 있어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자개인별서비스(service nominatif électronique)”의 설치착업이 착수되었다.

건강-사회망(RSS)은 그 접속이 CPS라 불리는 스마트카드(carte à puce)의 보유자 즉, 등록된 건강관련 직업인에게만 가능한 광범위한 외부행정망(extranet)이다. 이 망의 이용중 대표적인 것은 우선 건강기록의 전송이다(국립의료보험금고의 Sesam-vitale인). 이를 위하여 사회보험가입자는 vitale I이라는 스마트카드에 의해 신원이 확인된다. 이 카드는 현재 보험가입자의 행정적 기록만을 포함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외부화일에 근거하여 입력되는 건강정보에 대한 참조를 포함할 것이 계획되어 있다(vitale II). 그리고, 이 망은 안전성이 보장된 우편함을 통한 의사동 직업인과 건강시설 사이의 모든 성질의 정보의 교환에 이용된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 망의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다.⁶¹⁾

- 건강직업인과 건강관리센타직원의 이 망에의 가입의 촉진
-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정보은행에의 접근의 촉진
- 평생의료교육, 사진전자판독 등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 등

고용및연대부는 “Net-entreprises” 계획을 통하여 사회보장분야에서 기업이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인터넷을 통한 지불을 가능하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계획은 절차의 유형 및 기업의 규모 보다 정확히 말하면 정보통신시설의 정도에 적응된 정보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네가지 서비스유형이 제공될 예정이다.

61) 이 계획안에 관한 정보는 건강부 사이트인 www.sante.gouv.fr/sis/index.htm과 수탁기관인 Cogetel 사이트인 www.cegetel.rss.fr 참조.

우선 기업의 선택에 맡겨진 세 인터넷상의 신고서비스에 대응하여 전자 결제방식이 제공된다 : ①자동신고 또는 인터넷상 입력된 정보의 교환(E DI-Net), 전자서식에 의한 신고 또는 인터넷상 입력된 서식의 교환(E FI-Net), 쌍방향신고 또는 인터넷상 개인화된 신고기술(ELP-Net déclaratif).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개발된 정보 및 모의실험(simulation) 서비스 : 단일창구 Net-entreprises 또는 인터넷상 개별화된 정보기술(ELP-Net informatif).

1994년 조세법전(CODE GENERAL DES IMPOTS)의 개정으로 모든 기업의 행정에 대한 신고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전자적 수단에 의해 행해질 수 있게 되었다.⁶²⁾ 그리고, 1999년 개정조세법 천안 제17조는 개인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조세신고서의 송부에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 전자조세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정성과 비밀성이 보장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진정성은 다음과 같이 보장된다 : 송부 이전에 납세자의 이름이 외에 그에게 송부된 사전인쇄된 신고서에 나타나는 개인부과화일에 있는 신원확인번호를 포함하는 전자서명을 통하여 납세자의 신원이 확인된다. 비밀성은 다음과 같이 보장된다 : 인터넷에의 접속은 안전이 보장된 방식으로 하고 정보의 송부는 암호화된다.

전자세금계산, 전자조세신고 및 전자지불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⁶³⁾ 매출액이 1억 프랑 이상인 기업은 2000년 12월 31일부터 세금신고를 전자적 방식으로 하고, 2001년 5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신고를 전자적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2001년 5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전자적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 이외의 기업은 2001년 5월 1일부터 전자부가가치세 규약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기업은 신고만을 전자적 방식으로 하고 납부는 전통적 방식으로하거나 전자신고와 전자납부를 동시에 하는 것을 선택 할 수 있다.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는 다음과 같이 행해진다. 사업자는 경제·재정·산업부 사이트에서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그것을 작성한 후 전자

62) 1649 quater B quater et 1695 quater du CGI.

63) www.finances.gouv.fr.

우편으로 신고하면 조세국(DGI)은 전자우편과 동시에 구두로 수신확인을 한다. 전자신고절차에 가입한 자는 조세납부를 전자결제로 할 수 있다. 전자결제는 신고자의 구좌로부터 신고금액을 인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전자신고 및 전자결제는 인증된 전자서명에 의해 행해진다. 전자서명은 서명한 자가 바로 신고자이고 수신된 내용이 작성으로부터 어떠한 변경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보증되고 발신자는 그의 발신을 부인할 수 없다. 만일 그 내용이 제3자에 의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서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2000년 4월 13일 다음과 같이 1999년 소득신고에 있어서의 인터넷의 사용결과를 발표하였다.

- 세금산정에 관한 자문 1500000건(작년 800000건)
- 인터넷을 통한 서류의 입수 400000건(작년 80000건)
- 전자우편에 의한 메시지 25000건(작년 16000건)
- 전자신고 4500건(전자신고는 실험실시하였음)

앞으로 전자신고를 위하여 모든 형태의 컴퓨터로부터 이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자에게 인터넷상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소득세산정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건축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건축허가신청의 진행상황을 문의할 수 있고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입수할 수 있다.

파리지역의 교통상황이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다.⁶⁴⁾

Haute-Vienne에서의 자동차의 무담보증명서의 신청이 인터넷을 통하여 행해지고 있다.⁶⁵⁾

Isere 도청은 운전면허증의 교부를 위한 전자행정절차를 창설하였고, Haute-Vienne 도청은 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를 위한 전자행정절차를 창설하였다.

2000년 말부터 2001년초 사이에 수용의 공공필요성의 조사가 인터넷을 통하여 행하여질 예정이고, 전자서명에 관한 명령안과 정보화사회를 위한

64) www.sytadin.tm.fr.

65) www.haute-vienne.pref.gouv.fr.

법률안(*le projet de loi sur la société de l'information au Conseil des ministres pour fin 2000*)이 인터넷을 통한 일반 공중의 자문의 대상이 될 것이다.

2001년 4월 17일 행정간소화위원회 회의에서는 1년 이내에 기업인에게 괄호안의 천자민원(단일채용신고, 사회정보연간신고, 사회정보단일신고, 부가가치세전자신고, 소득전자신고)을 신설하는 계획이 토의되었다.

4. 민원처리과정의 공개

Calvados도의 시설국은 인터넷을 통하여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자문을 행하고 신청서 및 칠의의 심사상황, 심사기간을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5. 전자행정기관

전자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해 대국민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상기 1999년 12월 31일의 수상훈령은 공중의 요구를 잘 알고 그들의 요구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공중과 가까이 있는 기관의 전자행정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이들 기관이 1999년 2월 2일 명령에 의해 새로이 규정된 행정서식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새롭게 신설된 이들 행정기관이 법률의 상이한 해석이나 행정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이용자와 불평등을 야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각부의 정책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행정서식을 제공하기를 원하는 행정기관은 최소한 이 훈령에 부속된 헌장에 명시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하여 이 헌장의 규정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행정각부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2000년 1월 31일까지 즉시 자격부여를 원하는 기관의 사이트의 목록을 DIRE의 관인을 받아 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한 헌장과 함께 수상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행정절차 및 행정서식의 간소화와 전자행정

행정간소화⁶⁶⁾는 행정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도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조치중 전자행정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기술하기로 한다.

(1) 2000년 3월 6일의 행정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수상의 통첩

2000년 3월 6일의 행정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수상의 통첩중 전자행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행정과 국민 사이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의 관계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시민과의 관계에서 입장서류는 그의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분석후에 최소한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정서식의 인터넷을 통한 제공에서 나아가 행정과 기업 사이의 디지털정보의 이전을 확대하여야 한다. 소규모기업도 정보의 비밀을 준수하면서 전자서명에 의해 행정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이전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은 행정절차간소화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간소화위원회는 새로운 기술의 사용과 관련되는 문제의 해결에 있어 다른 행정기관을 지원함에 있어 MTIC의 협력을 받는다.

(2) 2001년 5월 25일 수상의 제2001-452호 명령

2001년 5월 25일 수상은 명령 제2001-452호로 행정간소화에 관한 기존의 명령인 1998년 12월 2일의 명령을 개정하는 행정절차 및 행정서식의 간소화에 관한 명령을 발하였다. 그 명령중 전자행정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6) 행정간소화에 관한 1998년 12월 2일 제98-1083호 명령은 행정간소화에 관한 기본적인 법령이다.

공중에게 제공되기 전에 행정간소화위원회는 행정서식에 번호를 부여하면서 행정서식을 숙인한다. 이 숙인은 경우에 따라서 송부서, 고지서 및 행정서식에 첨부되는 안내서 및 입증서류의 목록에도 행해진다.

행정간소화위원회는 행정절차상 요구되는 정보 및 서류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행정서식을 발하는 행정기관이 이미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의해 통지될 수 있는 정보를 이용자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감독한다.

이 위원회는 행정서식 및 전자행정절차의 구상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공시설법인은 원하는 경우 행정서식 및 전자행정절차에 있어서 이 위원회에 전문능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행정절차의 질의 제고와 간소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권고를 발한다(제2조).

공중 행정정보사이트인 Admifrance는 service-public.fr로 대체된다.

행정간소화위원회는 현재 가능한 전자행정절차 및 행정서식의 목록을 service-public.fr 사이트에서 일반 공중에게 제공한다.

(3) 행정간소화 및 행정서식의 전자화에 관한 2001년 5월 25일 수상의 통첩

행정간소화 및 행정서식의 전자화에 관한 2001년 5월 25일 수상의 통첩은 상기 명령 제2001-452호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행정서식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2000년 3월 6일의 통첩을 보완하는 통첩인데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전자행정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통첩의 내용 중 전자행정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에게 요구되는 행정부담의 경감의 추진

각 시민에게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詐欺에 대응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은 입증서류의 요구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 적업인 및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자행정절차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행정간소화위원회는 신청시 요구되는 입증서류의 목록을 조사할 임무를 가지며 입증서류는 행정서류 숙인의 일부분이 된다.

행정간소화위원회는 행정기관이 그가 담당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고 보존하는 것을 지원하고 지도한다.

행정간소화위원회는 행정각부의 기관, 그의 감독 또는 통제하에 있는 공공시설법인 또는 행정기관이 주소를 변경하는 이용자의 서류의 이전을 개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2001년 말까지 수상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2) 간소화정책의 강화

1998년 1월 26일의 통첩에 의해 국사원의 심의를 거치는 법령은 행정간소화 및 기업 및 기타 이용자에 대한 행정절차 등에 대한 법령안의 영향에 대한 조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사서는 절차에 개입하는 기관의 수, 신설된 행정절차와 그 타당근거 및 결정에 요구되는 평균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곰곰사이트에서의 행정서식의 제공의 조정

행정서식의 조화, 적정화 및 간소화를 담당하는 행정간소화위원회는 2000년 3월 6일 수상의 통첩에 의해 정해진 조건하에서 승인된 서식을 프랑스행정의 관문인 "service-public.fr"에서 제공하는 것을 보장한다.

각 행정기관은 승인신청서류를 이 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⁶⁷⁾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계장관에 의해 제시된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내에 서식안과 첨부서류를 검토한다. 서식을 만든 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위원회는 서식안의 승인을 보류하고 필요한 경우 내각 비서실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서식과 첨부서류의 승인을 받은 행정기관은 이 문서의 최종적인 디지털화일을 COSA에 재송부한다. 행정기관은 언제 담해 서식이 인터넷상에서 제공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인터넷에 올린다.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및 공공시설법인이 서식의 디지털판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의해 통지된 전자주소 또는 서식

67) [www.cerfa.gouv.fr의 "écrire à la COSA"란](http://www.cerfa.gouv.fr의 'écrire à la COSA'란).

을 만든 기관에 링크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고 공공사이트로부터 이용자에 의해 작성된 서식은 적법하여 따라서 행정기관은 제출된 그 서식을 거부할 수 없고 그가 보유하는 다른 또는 동일한 서식에 의해 제출된 그 서식을 대체할 수 없다.

COSA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사이트에 올리기를 원하는 서식의 전자주소를 알려 준다.

위원회는 승인되고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서식의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공공사이트의 관리자에게 이 정보를 제공한다.

위원회는 연간보고서에 이 분야에서의 실행된 노력과 부탁친 장애를 기술한다. 위원회는 서식, 입증서류목록 및 개인 또는 직업인이 따라야 할 절차의 일반적인 조직과정의 합리화 및 간소화에 의해 이용자 및 행정기관의 시간절약을 평가하여야 한다.

4) 전자행정절차의 발전과 감독

2000년 10월 12일 수상의 주재하에 모인 국가개혁행정각부위원회는 전 행정절차의 점진적인 전자화의 원칙을 결정하였다. 우선 2001년부터 약 20개의 전자행정절차가 실시될 것이다.

이에 따라 COSA의 역할이 다음과 같이 확대된다 :

- 위원회는 국가차원 또는 지방차원에서 존재하는 전자행정절차를 조사하고 사이트 운영자인 프랑스문서국과의 협의하에 그 목록을 service-public.fr에 올린다. 이 목록은 전자행정절차에 대한 네티즌의 접근을 촉진할 것이다. 위원회는 그 목록의 업데이트를 책임진다.
- 위원회는 국가개혁행정각부위원회에 의해 매년 조직되는 공공사이트의 평가조사에서 국가차원 및 지방차원에서 실시되거나 준비중에 있는 전자행정절차의 조사를 담당한다. 이 조사의 결과는 공공사이트의 평가보고서에 기록된다.
- 위원회는 "administration 2000"이라는 마크가 부여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자행정절차를 평가한다. 문서국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 전자행정절차의 활용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 행정기관이 전자행정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국가개혁행정각부위원회는 MTIC가 행정각부, 국방부사무처 및 위원회의 협력하에 만들고 있는 시설관리자지침과 기술지침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행정절차의 전자화를 위한 지침을 작성한다.

행정기관은 기업 및 개인과의 관계에서 사회보장비 및 세금의 지급을 은행카드 또는 전자지급에 의해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7. 전자행정과 기존의 전통적 행정방식

전통적 행정방식은 우편, 전화 또는 민원창구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프랑스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행정방식은 이와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행정방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추가되는 새로운 행정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전자행정방식의 이용이 확대되는 것을 촉진하여야 하겠지만 기존의 전통적 행정방식을 배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행정의 상대방의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행정의 상대방이 직접 출두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 전자행정방식보다는 기존의 전통적 행정방식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전자행정방식에의 접근이 모든 국민에게 가능하게 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전자행정방식만을 인정하는 것은 행정에서의 국민의 평등을 침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전통적 행정방식을 인정하면서 전자행정방식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프랑스 전자행정정책의 현재의 목표이다. 전자행정은 행정과 국민 사이를 보다 가깝게 해줄 것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행정서비스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정비

1. 전자문서의 공개

2000년 개정되기 전의 1978년에 제정된 행정과 공중의 관계개선조치에 관한 법률 제1장은 행정정보공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정보의 자동처리의 형식을 통한 결정이 포함되었었다(제1조). 그러나, 전자문서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다.

2000년 4월 12일 1978년 법률이 개정되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컴퓨터상에 존재하는 문서도 포함되는 것으로 되었다. 공개방식과 관련하여 서면에 의한 복사이외에 행정기관의 기술적 가능성의 한계내에서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행정기관에 의해 사용된 것과 통일한 매체에 기초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복사의 교부도 가능한 방식으로 추가되었다.⁶⁸⁾

그리고, 1978년 7월 17일 법률 제78-753호의 시행을 위해 제정되고 행정문서의 공개방식에 관한 2001년 6월 6일 명령 제2001-493호 제1조는 공개문서의 복사는 서면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의해 사용된 것과 동일한 컴퓨터매체 및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정보공개신청인이 컴퓨터매체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문서의 복사물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개청구를 받은 기관은 행정기관에 의해 사용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총천에는 프랑스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은 기명이 아닌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규율하고 있었다(1978년 법률 제1조). 그리고, 그 공개가 사생활, 개인서류 및 의료서류의 비밀에 침해를 가하는 문서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1978년 법률 제6조).

그런데, 2000년 개정법률에서는 기명정보(개인정보)도 정보공개에 관한 이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인에 관한 정보는 관계인(*personne intéressée*)에게만 공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 공개가 사생활 및 개인서류의 비밀, 의료비밀에 침해를 가할 문서
- 명시적으로 특정되었거나 쉽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연인에 대한 가치평가 또는 가치판단을 가져오는 문서

68) Loi 2000-321 12 Avril 2000 art 7 JORF 13 avril 2000.

- 어떤 사람의 행태의 폭로가 그 사람에게 침해를 가져올 경우에 그 사람의 행태를 나타나게 하는 문서.
그리고, 의료적 성격의 정보는 지명된 의사를 매개로 하여서만 관계인에게 공개될 수 있는 것으로 되었다.

3. 적극적 정보제공

전자정부하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요청된다.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전자정부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공공정보의 제공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정보의 생산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관이 직접 제공할 수 있고, 다른 행정기관에 의해 생성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 성립된 행정각부와 관련된 독립된 정보제공기관(예, 프랑스 문서국)이 제공할 수 있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제공업무를 담당하는 사기업이 행할 수 있으며 사기업 또는 협회 등이 독자적으로 공공정보를 입수하여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할 수도 있다.

(1) 법률정보의 제공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의 제공에 관한 법령으로는 1996년 5월 31일 제96-481법령(법률정보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데크레)과 1998년 12월 17일의 통첩(행정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상에서의 법률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첩)이 있다.

- 1) 1996년 5월 31일 제96-481법령(법률정보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데크레)

가) 제공되는 법률정보

다음과 같은 법령, 설명서 및 분석서가 인터넷상에서 제공된다(제1조) :

- 공포된 조약 및 국제협정
- 법률과 명령

- 유럽공동체 공보에 공포된 문서
- 상기 1978년 법률 제9조에 의해 공포된 훈령 및 통첩
- 확장명령의 대상이 된 국가집단협정(*des conventions collectives nationales*)
- 헌법재판소, 행정최고법원인 국가원 및 관할재판소의 결정
- 파체원과 회계원의 결정
- 행정항소법원 및 행정재판소의 판결
- 사법재판소의 결정
- 지방회계원의 결정
- 유럽공동체 사법재판소 및 1심재판소의 결정
- 유럽인권위원회의 판결 및 결정
- 독립행정기관의 공포된 문서
- 기타 수상의 부속명령 및 관계장관의 명령에 의해 그 유형이 정해진 법률적 성격의 공식문서

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임무는 다음과 같다.

-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있어서는 전자화된 정보가 나오는 행정기관⁶⁹⁾, 그 행정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보국이 담당한다.
- 데이터베이스의 형식, 집합 및 체계적 일관성의 유지는 공보국이 담당 한다.

다만, 허가를 받는 경우 다른 행정기관이 담당할 수 있거나 공공서비스의 위임에 의해 제3자에게 맡겨질 수 있다.

법률정보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업무조정은 그 조직과 구성이 수상의 결정에 의해 정해지는 법률정보데이터베이스공공서비스위원회에 의해 보장된다(제3조).

법률정보데이터베이스의 작성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또는 일단의 행정기관은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에 대한 자문을 행하는 전문가를 공보국에

69) 이 명령에서 행정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법원 및 국가에 속하는 공법상 조직체를 말한다.

지정한다. 이들 전문가는 공보국장의 주재하에 적어도 일년에 한번 모이고 상기 위원회에 그의 작업에 대해 보고한다(제4조).

공보국, 행정기관 또는 이 평령 제3조 제2항의 적용에 의해 지명된 제3자는 동일 조항에 의해 그에게 속하는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모든 문서, 자가적 또는 광학적 매체에 의해 이미 기록된 일체의 정보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제5조).

제1조에 열거된 유형의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안은 모두 관계 행정기관에 의해 2개월내에 의견을 제시하는 제3조에 언급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의견은 상충하는 비용지출안에 첨부된다(제6조).

다) 제 공

제1조에 언급된 데이터베이스의 전자적 수단 또는 매체에 의한 공개는 위탁의 대상이 된다(제7조).

데이터베이스의 행정기관에 의한 외부에의 제공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처음에 내부의 이용을 위하여 구축되었거나 아니면 외부에의 제공을 위하여 창설되었거나 2개월이내에 그 의견을 제시하는 제3조에 언급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의견은 상충하는 비용지출안에 첨부된다.

위에 언급된 외부에의 제공은 제7조에 언급된 수탁자에 의해서만 실현 될 수 있으며 구축조직체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의한다(제8조).

제8조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 수상은 수탁자가 외부에 대한 제공서비스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외부에의 제공을 허가할 수 있다(제9조).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자는 그가 보유하는 입력된 정보를 다시 제공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이 재제공은 수탁자에 의해 위탁자의 이름으로 주어지고 위탁에 의해 설정된 일반적인 조건에 따라 수탁자의 형평성있는 대가와 다시 제공하는 자에 의한 일반이익의 요구의 준수를 정하는 허가의 대상이 된다(제10조).

공보국장은 직권 또는 행정기관의 요구 또는 수탁자의 요구에 따라 위

탁의 침행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제3조에 언급된 위원회에 그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매년 법률정보데이타베이스서비스의 운영조건에 대한 평가를 행한다.

2) 1998년 12월 17일의 통첩(행정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상에서의 법률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첩)

가) 행정각부사이트와 레취프랑스

행정각부와 그 소속 지방행정기관은 독자적인 인터넷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사이트에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어느 법률정보를 제공할 것인가는 원칙상 각 행정각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그러나, 제공되는 정보의 통일성이나 질의 측면에서 몇 가지 제한이 가해지지 않을 수 없다. 즉, 행정각부를 초월하여 법률정보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의 사이트의 존재를 고려하여야 하며 법률정보제공서비스를 조직하는 1996년 5월 31일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각부장관은 그에 소속되었거나 그의 감독하에 있는 기관이 법률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LEGIFRANCE와 보완관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각부의 사이트는 레취프랑스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법률정보는 다시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보의 불일치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요청된다. 그리고, 일반 공중에게 필요한 법률정보가 레취프랑스에 없는 경우에는 레취프랑스의 법률정보목록이 보완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들 요청은 내각 사무총장의 주재하에 행정공무원, 법원관계자, 대학교수, 법률직업대표, 법률출판대표 등이 참석하는 사이트편집위원회에 의해 검토된다. 행정각부가 새로운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레취프랑스를 담당하는 내각사무처의 문서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레취프랑스는 기본적인 법률정보만을 제공하므로 레취프랑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법률정보는 행정각부사이트에서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 수상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게 법률정보데이타베이스의 구성과 법률정보의 제공에 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국가기관에 의한 법률정보의 제공조건에 대하여 레취프랑스를 관리하는 기관은 심사할 권리가 있다.

행정각부의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법령은 전문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규범과 규범에 대한 해설 및 그에 관한 통찰이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나) 법률정보제공기관

법률정보의 제공을 담당하는 특별기관인 법률정보데이터서비스기관이 1984년 창설되었는데, 이 기관이 창설된 이유는 모든 법률정보가 모든 관계법률분야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의 신뢰성, 맘라성 및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정보데이터베이스의 형식 및 일관성은 공보국이 담당하고 단일의 수탁자가 이와 같이 조직된 법률정보를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담당한다.

(2) 공공보고서의 제공

1999년 1월 28일의 통첩은 공공보고서의 인터넷상의 무료제공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공공보고서의 인터넷을 통한 공개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다음과 같다. 정치적 토론, 행정결정의 준비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인쇄된 문서의 배포의 한계를 극복하고 특히 외국에 공적인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보고서의 인터넷을 통한 공개를 위하여 프랑스공보국의 책임하에 공공보고서디지털도서관이 창설되었다. 공보국은 그에게 제출된 보고서의 계속적인 보존과 Admifrance 사이트로부터의 접근가능성을 보장한다.

공공보고서디지털도서관은 수상 또는 장관에 의해 국회의원, 국사원, 다른 공적 기관 또는 특정인에게 맡겨진 보고서 전체의 제출처이다. 문서처리 및 인터넷을 통한 제공비용은 보고서를 위탁한 부서가 담당한다.

보고서의 인터넷을 통한 제공은 제출부서 장관의 동의하에 행해진다. 제출부서의 장관은 제출시에 보고서의 인터넷을 통한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보고서작성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행정각부는 그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디지털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를 다시 제공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행정각부

에서 다시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수반하고 행정각부에서 제공하는 보고서의 내용과 디지털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보고서의 내용이 틀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각부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보고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지털도서관 사이트에 링크하므로써 자신에 관한 보고서를 공중에 직접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수상의 이 훈령은 1999년 3월 1일부터 제출되는 보고서에 적용된다. 그 이전의 보고서는 선택하여 제공될 수 있다.

(3) LEGIFRANCE(legifrance.gouv.fr)

레취프랑스는 기술적인 간결성과 법적 안전성의 조건하에서 기본적인 법률정보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안된 법률정보서비스이다.

1998년에 개설된 레지프랑스라는 사이트(<http://www.legifrance.gouv.fr/>)는 무료로 법령, 관보, 법적 문제에 관한 정보, 주요판례 등을 제공하고 있다.

레취프랑스는 1998년 1월 1일 이래 발간된 프랑스공화국 공보중 법률과 명령부분이 제공되는 이외에 세 종류의 법원(민사법원, 행정법원, 회계법원)의 중요한 판례와 최근의 판례동향을 제공한다. 이들 법률은 검색일 현재 유효한 내용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동향란을 통하여 의회, 행정각부 및 헌법재판소의 사이트와 연결되도록 하여 주요 법률안의 작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업데이트한 최근의 날짜가 사이트에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4. 정보제공의 유효화문제

최소한 기본적 공공정보는 무료로 하는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 이들 기본적 공공정보는 국민에게 직접 제공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기업이 이 기본적 공공정보를 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허가를 요하는 경우는 있지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 공공정보는 쉽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공공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에 의해 그의 임무와 관련하여 공적 기금을 사용하여 수집되거나 생산되었고 제공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보”를 말한다.

기본적 공공정보라 함은 “그 제공이 시민의 권리행사에 필수적 요건인 공공정보”를 말한다. 예를 들면, 기본적 법령, 판례, 공공거래의 고지, 국가의 공식보고서, 공보에 공표되는 임명행위 등이 그 예이다.

기본적이 아닌 공공정보에 있어서는 사기업에 의한 이들 정보의 취득에 있어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생산주체인 공공기관에 의한 이들 정보의 상품화에 일정한 한계를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가치있는 공공정보의 유료화가 널리 행해졌었고, 공공정보의 유료화를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 공공정보의 인터넷을 통한 무료제공 및 유료제공과 관련하여 제공주체인 공공기관과 사기업사이에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경쟁 및 유료화의 문제에 관한 공공기관과 사기업간의 상호간의 협력과 갈등의 해결을 위한 장치가 마련될 것이 요청되고 있다. 만일 이와 관련한 조정기관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인 공공기관, 사기업 및 이용자의 대표가 그 구성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관은 자문 및 권고의 권한과 조정 등 분쟁해결권한을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5. Balladur 통첩

Balladur 통첩은 공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1994년 2월 14일 통첩을 말하는데, 현재까지는 공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일반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공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기본적인 규율이 되고 있다. 이 통첩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정보의 제공의 그 내용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가공된 정보 서비스는 상공업자유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공을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은 공중에 대한 이익에 비추어 심히 균형을 잃어서는 안된다.
- 제공방식은 그 제공이 공공서비스의 임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공서비스의 위임절차는 "Sapin 법률"이라 불리는 1993년 1월 29일의 법률에 규정된 자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공의 유료화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수수료의 부과는 행정기관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 생산비용이 공적 자금에 의해 지원된 경우에는 그 생산비용은 수수료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 일반비용기여분은 이 서비스의 제공으로부터 직접 기인하는 비용에 한한다.

공공정보의 제공이 이와 같은 엄격한 원칙에 의해 규율되는 반면에 행정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일정한 특권이 부여된다.

- 어떠한 법률규정이나 어떠한 법의 일반원칙도 형성된 정보의 공적기관에 의한 제공을 금지하지 않는다.

6. 행정기관의 편집활동

행정기관의 편집활동은 공적 기관과 민간출판업자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의 주제이었다. 그리하여 수상은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검토결과를 통첩으로 제정한 것이 1998년 3월 20일의 행정기관의 편집활동에 관한 통첩이다.

행정에는 7개의 출판기관이 있다. 공보국, 프랑스문서국, 국립박물관연합, 국립역사기념물및유적지금고, 국립과학연구원, 국립및지역교육문서원, 국립출판이 그것이다. 이들 기관은 상업적 성격의 저작물을 편집할 권리를 갖는다. 그렇지만 이들 활동은 다음과 같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 경쟁법은 천적으로 행정기관에도 적용된다. 특히 판매가격은 현실적이어야 하고 생산과 판매비용 전체 및 조직비용에의 기여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 원천정보에 대한 민간출판업자의 접근은 제한될 수 없다.
- 정보의 내부이전가격은 완전원가비용(*le cout de revient complet*)을 고려하여야 한다.

- 민간출판업자와의 공동출판은 장려되어야 한다.

상기 7개의 출판기관 이외의 기관은 출판활동을 할 수 없다. 이들 기관이 출판하기 위하여는 프랑스문서국 또는 민간출판업자에게 출판을 맡겨야 한다.

7. 정보제공과 행정기관의 책임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이 공개하여서는 안될 정보를 제공하거나 틀린 정보를 제공한 경우 또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정보제공담당자의 민사 또는 형사 책임과 국가배상책임의 문제가 제기된다.

제 4 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정비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규율의 배경과 경과

행정기관의 색인화작업(fichier)은 시민의 기본권 특히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를 야기하였다. 이에 더하여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색인화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다. 컴퓨터의 등장으로 대량의 색인의 작성과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74년 로몽드신문은 “행정색인의 자동화체계 및 개인명부집”이라 불렸던 내무부의 계획안을 폭로하였다. 이 계획안은 1891년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고유한 식별표시(국민신원번호)를 부여하고 행정기관의 색인 사이의 최선의 공동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아직도 운전자색인이라 불리는 도로안전에 관한 국민컴퓨터색인에 관한 입법이 있었다(도로교통에 관한 문서의 중앙화에 관한 1970년 6월 24일 법률). 이러한 법안이 명령안이 아니라 법률안으로 제기되면서 그러한 색인화의 기본권에 대한 위험성이 인식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법률은 관계인에게 색인에 대한 접근권과 정보의 수정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관계인의 권리는 1978년에 제정된 정보처리, 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Loi n° 78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은 사회의 정보화의 발전이 사생활, 개인의 기본권 및 인간의 청체성의 보호에 대해 야기하였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1978년에 제정된 정보처리, 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Loi n° 78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은 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전자화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개인정보의 자동처리를 규율하고 있다. 이 법률의 목적은 개인의 권리와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의 자유를 조화시키는데 있다.

이 법률은 그 후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또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번 수정되었다. 그 개정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92년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다만, 시행일은 1994년 3월 1일).⁷⁰⁾ 인종 또는 정치적, 철학적 또는 종교적 의견 또는 조합소속 또는 인간의 품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드러내는 개인정보를 관계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정보처리 할 수 없고 또한 정보처리된 된 형식으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국사원의 동의를 받은 명령에 의한 위원회의 제안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1조).

1994년 개정법에서는 특히 의료정보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다. 개인의 치료를 위하여는 정보의 처리가 허용되고, 보건분야에서의 연구를 위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개인정보의 자동처리가 허용되지만 정보처리는 국가정보처리·기본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송부할 때에는 암호화하여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0-1조, 제40-2조, 제40-3조). 의료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하여는 1999년과 2000년에도 관련규정(제40-3조 제2항)의 개정이 있었다⁷¹⁾.

70) Loi 92-1336 16 Décembre 1992 art 257 JORF 23 décembre 1992 en vigueur le 1er mars 1994.

71) Loi 99-641 27 Juillet 1999 art 41 JORF 28 juillet 1999 : Loi 2000-321 12 Avril 2000 art 5 JORF 13 avril 2000.

2000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다시 보완개정 되었는데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⁷²⁾ :

기명정보의 보존기간에 있어서 종전 법률은 “반대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정보는 그 보존이 위원회에 의해 허가되지 않는 한 의견신청시 및 신고시에 예정된 기간 이상으로 기명의 형식으로 보존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기명정보의 보존기간을 제한하고 있었다. 2000년 개정법은 이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정보는 역사적, 통계적 또는 과학적 목적의 처리를 위하여만 그 정보가 수집되고 처리된 목적의 실현에 필요한 기간 이상으로 개인정보의 형식으로 보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관될 정보의 선택은 기록물에 관한 1979년 1월 3일 법률 제79-18호의 제4-1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행해진다”(제28조 제1항). 이와 함께 기록보관소에 관한 1979년 1월 3일 법률 제79-18호에 의해 기록보존소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다. : “제3조의 문서가 정보처리, 파일 및 기본권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에 의해 규율되는 자동 처리차원에서 수집된 기명정보를 포함하는 때에는 이들 정보는 상기 법률 제28조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면 보존될 정보와 과학적, 통계적 또는 역사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삭제될 정보를 결정하기 위한 선별의 대상이 된다. 삭제될 정보유형 및 그 삭제요건은 그 정보를 생산하거나 취득한 기관과 기록보존행정기관 사이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

그리고, 제31조에 규정된 것이외의 이와 같이 보존된 정보는 그 처리가 관계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관련된 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원회에 의해 허가되지 않는 한 역사적, 통계적 또는 과학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들 정보가 제31조에 언급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처리는 관계인의 명시적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공익의 동기 또는 관련된 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원회의 계안 또는 동의에 근거한 국사원의 심사를 거친 명령에 의해 허가되지 않는 한 실행될 수 없다(제28조-2).

72) Loi 2000-321 12 Avril 2000 art 5 JORF 13 avril 2000.

2.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1) 적용범위

개인정보보호법은 공적 색인 및 공적 정보처리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한다. 그 이유는 행정기관은 많은 양의 색인을 갖고 있고 색인간의 매칭이 가능하므로 공적 부문에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사인에 의해 실행되는 정보처리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점에서 또한 그 특색이 있다. 즉, 이 법률은 공적부문의 개인정보와 사적 부문의 개인정보를 동시에 규율하고 있다. 다만, 공적부문의 개인정보에 대한 규율내용과 사적부문의 개인정보에 대한 규율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공적 부문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는 사전허가의 대상이 되지만 사적 부문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는 단지 신고로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구별은 1995년 10월 24일 유럽연합 지침 제95-46호에 의해 재검토를 요하게 되었다. 이 법률은 기밀정보의 처리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일정한 수기화일에도 적용된다.

(2) 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

국가정보처리및기본권위원회(CNIL)은 사인 및 공법인에 의한 법률의 준수를 감독·통제한다. 국가정보처리및기본권위원회는 독립된 행정위원회(*une autorité administrative indépendante*)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

17명의 위원이 있는데 임기는 5년이다. 그 위원의 대부분은 선출직이다 : 하원에서 선출된 2명의 하원의원, 상원에서 선출된 2명의 상원의원, 경제사회이사회총회에서 선출된 동 위원회 위원 2명, 국사원총회에 의해 선출된 국사원 현직 또는 전직위원 2명, 파체원 총회에 의해 선출된 파체원 현직 또는 현직위원 2명, 회계원총회에 의해 선출되는 회계원의 현직 또는 전직 위원 2명, 그 이외의 위원은 임명된다 : 하원의장 및 상원의장의 각각의 추천에 의해 데코레에 의해 임명되는 컴퓨터분야전문가 2명, 상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데코레에 의해 임명되는 그의 권위 또는 그의 능

력을 보아 지명되는 위원 3명, 이 위원회에는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없다. 다만, 수상에 의해 지명되는 정부위원이 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을 뿐이다.

3. 행정각부 인터넷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1997년 5월 16일 명령(수상을 대리한 내각사무총장의 명령)은 행정각부의 인터넷사이트에 있어서 행해지는 기밀정보의 처리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1) 인터넷 사이트의 구성

행정각부는 인터넷상에 기밀정보의 처리를 포함하고 다음의 분야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제1조).

- 장관의 이력
- 장관 비서실의 구성
- 행정각부의 역사와 조직도
- 장관의 권한분야에 있었던 장관회의에서의 임명
- 장관의 비망록
- 행정문서
- 천자우편
- 토론판
- 퀴즈코너

(2) 기밀정보처리의 목적

제1조에서 언급된 서비스에 있어서의 기밀정보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제2조) :

- 행정각부통신의 차원에서의 정보의 제공 : 비서실의 구성에 관한 정보, 장관의 비망록, 행정각부에 관한 장관회의에서의 임명
- 행정정보의 제공 : 기관의 역사와 조직도, 행정각부에 관한 행정문서

- 행정각부의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제에 대하여 사이트의 이용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가능성
- 전자우편에 의해 장관 또는 그의 기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
- 퀴즈에의 참가

(3) 기명정보의 내용

관계인에게 요구될 수 있는 기명정보는 다음과 같다(제3조)

장관 및 그의 비서실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된다 : 이름, 사진, 직무, 권한, 자격, 교육, 훈장, 직업생활 및 정치생활, 경우에 따라서 소속공무원단.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된다 : 이름, 사진, 직무, 권한, 임명일, 소속공무원단.

장관비망록에 나타나는 인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된다 : 이름, 직무, 자격, 조직.

이용자중 토론판에 참가하는 자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통신의 대상 및 선택적으로 이름 및 전자우편주소.

장관 또는 그의 기관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는 자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통신의 대상 및 선택적으로 이름, 조직, 사회직업상의 유형.

특정우편함의 수단에 의해 장관 또는 그의 기관에게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퀴즈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선택적으로 이름, 가명, 나이, 학년, 꼬뮨느, 국가.

(4) 개인정보보호

장관의 비서실 및 행정각부의 직접 관계 있는 기관만이 전자우편의 기명정보의 수신자가 될 수 있다. 다른 정보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제4조).

접근 및 수정권이 관계 행정각부 소속직원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

정부통신 또는 행정정보의 차원에서引用된 자는 모두 그에 관한 정보의 인터넷상에서의 제공에 대한 반대권을 갖는다. 이 권리의 행사방식은 기관의 지침에 의해 구체화된다(제6조).

인터넷사이트의 이용자는 전자우편수신페이지 및 토론판장페이지에 의해 그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를 받는다. 그리고 위 페이지는 통신비밀 및 안전성에 관한 인터넷에 내재하는 위험에 대해 언급하여야 한다(제7조).

인터넷상에 행정각부 사이트를 실행하기 전에 관계장관은 이 모델에의 합치에 대하여 국가정보처리기본권위원회(CNIL)에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제8조).

- 사이트에 의해 보장되는 서비스 및 이를 서비스에 대응하는 기명정보를 제시하는 것
- 접근권의 행사장소를 적시하는 것
- 안전에 관한 부속서를 포함하는 것

4. 전자카드

전자행정의 확대와 질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현재 사회보장분야에서 스마트카드(*carte à puce*)가 도입되고 있다.

그런데, 전자신원카드(*carte d'identité électronique*)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기본권침해의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초기에는 그 사용범위를 크게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처음에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lois 괴문느는 스마트카드인 주민카드를 도입하고 있다. 이 스마트카드는 Blois 주민의 진정한 의미의 시여권이다. 이 카드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수수료의 지급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서식 등 행정절차를 축소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이용자 사이의 절차를 간소화 한다. 또한 이 스마트카드는 시설에의 출입을 통제하고 이용자의 필요에 관한 신뢰할 수 있고 신속한 통계를 제공하고 예약을 관리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해준다. 1991년부터 추진된 Blois시의 목표는 시의 모든 행정기관(교육사무, 유아행정, 청소년진흥, 체육서비스, 문화서비스, 사회보장시설의 운영, 시재정사무)과 주민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 카드는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데 주로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다. 2000년 현재 꼬뮨느주민 50000명중 12000명(4500가정)이 이 카드를 가지고 있다.

이 카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재정분야에서 詐欺에 대응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사회보장금의 미수령자의 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운영면에서 단일창구의 실현이 가능하고 수입의 집중관리가 가능해진다. 인사면에서는 직무수행의 자동화로 인하여 공무원을 주민에게 보다 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에 보다 더 배치할 수 있게 해준다.

제 5 절 정보접근에서의 평등

전자행정의 실시에 있어 전자행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불평등을 도외시하여서는 안된다. 전자행정에서의 국민 사이의 불평등은 세 차원에서 제기된다. 우선 세대간의 불평등문제가 제기된다. 노인은 젊은 세대보다 정보통신기술의 습득에 어려움을 느끼고, 정보통신기술의 습득에 의욕을 적게 갖는다.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 장애인 및 교육을 받지 못한 자는 다른 사람에 비하여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더 큰 어려움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반이 잘 정비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에 불평등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농촌지역이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문제 가 있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①아직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할 수 없는 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전자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전자적 방식과 함께 기존의 전통적 행정방식을 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②도서관, 우체국 및 행정기관에 정보통신시설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다.

제 6 절 정보화사회에관한법률안(Projet de loi sur la société de l'information)

이 법률안은 2001년 6월 14일 이전의 제정 또는 개정 법령에 이어 프랑스사회의 정보화의 방향을 제시한 정부행동계획을 법제도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법률안은 인터넷망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면서 정보화사회의 발전에 실용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이 법안은 다음의 다섯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①제1편은 시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조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②제2편은 디지털망을 통한 통신의 자유가 인정되는 틀을 구체화하고 있다. ③제3편은 소비자의 보호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법규를 규정하고 있다. ④제4편은 개인 및 기업의 디지털망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조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⑤제5편은 정보화사회에서의 안전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중 전자정부와 관련이 있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보에의 접근(제1편)

정보통신공공서비스의 차원에서 제공되는 의무적인 서비스는 “인터넷통신(la communication en ligne)에의 접근의 제공”을 포함한다(제1조). 전화망에 의한 인터넷에의 접근의 중요성은 그것이 정보통신공공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을 정당화해준다.

제2조는 확실한 절차에 의해 인터넷통신서비스의 단순하고 분명한 확인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인 인터넷상의 도메인이름의 관리규정을 체계화한다. 이 조항은 본국영토, 도 및 해외자치단체에 대응하는 국가도메인관리의 법적 틀을 공고히 한다. 이 법안은 이 국가도메인의 성질을 “제한된 공적자원”으로 규정한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담당관에 의해 지정된 조직체에 대한 도메인이름관리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다. 두 단계로 나누어진 도메인의 정의 등 이들 도메인관리의 실무상의 방식,

등록신청의 통제방식, 일정한 도메인아름의 등록금지는 관계인과의 협의 하에 도메인관리자에 의해 정해질 것이다.

제1편 제2장은 공법인 및 공공서비스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인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공공정보에의 접근을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고 있다. 국가와 시민 사이의 투명성의 요구에 응하고 관계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이 공공정보의 제공서비스에 사용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제3조는 행정문서에의 접근을 다루고 있는 1978년 7월 17일 법률에 디지털공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새로운 편을 삽입시키는 규정이다. 이 법안은 1978년 7월 17일 법률의 이름(*La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을 행정문서에의 접근 및 공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1978년 7월 17일 법률 제78-753호(*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relative à l'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à la diffusion des données publiques*)로 바꾸고 있다. 이를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모든 공법인 및 공공서비스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인에게 그들이 수집하거나 생산하는 디지털정보를 공중에게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수료가 부과되는 이와 같이 제공되는 정보는 그것들이 변형되지 않고 그의 원천이 언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상업적 목적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 의해 사용되거나 제공될 수 있다.

정보의 공중에 대한 제공이 상업적 개발목적으로 요청될 때 그 제공은 공법인과 신청자 사이의 이러한 개발로 얼굴 재원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보수의 방식 등을 정하는 협정의 체결후에만 가능하다. 그러한 협정의 작성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행정문서공개위원회(CADA) 또는 그에 의해 지명되는 위원회의 위원이 조정권한을 갖는다.

②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적 공공정보(*des données essentielles*)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이 조에서 말하는 기본적 공공정보는 다음과 같다 : ①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개의무의 대상이 되

는 국가 또는 그의 행정공공시설법인에 의해 내려진 행위 및 결정 전체와 그에 부속된 문서, ②이용자의 행정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성질의 공공서비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정보, ③이 법률 제1편의 적용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임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보고서 및 조사서, 국가정보처리및기본권위원회(CNIL)의 의견을 들은 후 제정되는 국사원의 심사를 거치는 명령이 제3자에 의한 그 정보의 이용이 야기할 수 있는 사생활에 대한 침해 때문에 이 조의 규정에 종속되지 않는 제1호에 언급된 행위 및 결정문서를 정한다. 국사원의 심사를 거친 명령은 상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정보의 유형을 구체화할 수 있다. 이 명령은 국가 또는 국가의 행정공공시설법인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다른 정보유형을 기본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법규명령에 시각장애인의 접근가능성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의무를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에게 부과하는 것을 위임하고 있다.

제1편 제3장은 보존문서에 관한 1979년 1월 3일 법률 제79-18호를 개정하면서 기본적인 공공정보의 제공을 강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전자적 형식 등의 보존문서는 정보화사회의 본질적인 재원의 하나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공적보존문서의 매체, 장소 및 보존방식과 관계없이 공적보존문서는 청구한 모든 자에게 제공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보존문서는 일정한 기간 공개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법안은 사생활 및 의료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국가의 일정한 기본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문에서 제공의 제한기간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 보존문서에의 접근기간은 중천보다 축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일정한 보존문서(그 공개가 정부 및 집행권에 속하는 책임있는 기관의 심결의 비밀, 통화 및 공적자금, 상공업상 비밀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조세 및 관세법 위반의 조사에 침해를 가하는 보존문서)에는 25년의 기간, 그 공개가 의료비밀을 침해하는 문서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사망시로부터 25년의 기간, 그 공개가 국방의 비밀, 대외정책의 수행, 국가의 안전 또는 사람의 안전에 해를 가하는 문서, 그 공개가 사생활의 보호에 침해를 가하거나 특정의 또는 쉽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연인에 대한 가치판단을 공개하게 하거나 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 어떤 사람의 행태를 나타나게 하는 문서(이 경우 관계인이 사망한 후로부터), 사법서류 및 결혼등록부(이 경우 등록부의 폐쇄로부터)는 50년의 기간, 출생등록부, 미성년자에 관한 공적보본문서 및 대량파괴무기에 관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에 있어서는 100년간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상기 기간의 만료이전에 공적 보존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가 이들 문서의 열람으로 인한 이익이 법률이 보호하고자 한 이익에 지나친 침해를 가하는 데 이르지 않는 한도내에서 그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 주어질 수 있다.

2. 인터넷통신의 자유

제6조는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1조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인터넷 공공통신의 자유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제7조는 인터넷 공공통신은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2조에서 정의되는 방송통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통신활동은 공중에게 제공되는 점에서 사적 통신에 속하는 전자교환과 구별된다. 헤로쓰 또는 유선에 의해 제공되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서비스와 비교하여 인터넷 공공통신은 그것이 개인적인 신청에 의해 제공된다는 점이 특징을 이룬다. 제7조는 또한 인터넷 공공통신에 대한 고등방송위원회(CSA)의 권한행사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1편 제4장을 개정하고 있다. 고등방송위원회는 복수의 제공에의 시민의 접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17조에 의해 그에게 인정된 경쟁발전을 위한 일반적인 권고를 발할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정신에 입각하여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41-4조는 경쟁위원회는 방송통신부문에 있어서의 모든 협상 또는 협상안에 대해 고등방송위원회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것과도 관계가 있다.

제9조는 방송통신에 관한 1982년 7월 29일 법률 제82-652호 제6조에 의해 방송부문에서 규정되었던 응답권의 행사에 관한 법규를 인터넷통신에 적합하게 적용하였다.

제10조는 인터넷 공공서비스에 대한 그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법한 제출에 관한 1992년 6월 20일 법률 제92-546호를 개정하고 있다.

제11조와 제13조는 인터넷통신서비스를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자의 민사책임에 적용되는 법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2조는 지적재산권법전에 의해 규정된 위조암류의 특별절차에 의해 신청에 따라 오로도닝스에 의해 판결하는 대심재판소장의 권한을 동일한 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제14조는 정보통신운영자에게 이 통신에 관한 모든 기술적 정보를 그 통신이 끝난 후 즉시 지우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할 의무를 두 예외를 규정하며 부과하고 있다.

제16조는 삭제원칙 및 보조적인 보존의무에 관한 제14조에 의해 설정된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인 형사벌제도를 정하고 있다.

3. 전자상거래

제3편은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사회의 일정한 법적인 문제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2000/31/CE 지침을 국내법으로 도입하고 있다. 제3편은 투명한 틀내에서 전자교환을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조건을 정하고 있다. 이를 규정중 전자서명에 관한 부분만 소개하기로 한다.

프랑스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규정은 민법전의 채무의 입증에 관한 부분에 편입되었다. 그 결과 전자문서는 법상의 형식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 즉, 법령에서 서면으로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지워지고 있는 경우 전자서명의 사용이 어렵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화사회에 관한 법률안은 제3편 제7장 제1절 이하의 다음과 같은 규정이 두어진 것이다. 즉, “법률행위의 효력을 위하여 서면이 요구되는 때에 법률행위는 민법전 제1316-1조와 제1316-4조 그리고, 공중행위(*acte authentique*)가 요구되는 때에는 제1317조 제2항에 규정된 조건하에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되고 보존될 수 있다. 의무를 지는 자 자신

의 손으로 쓰여진 기록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 자는 그 서명의 첨부의 요건이 그 기록이 그 자신으로부터 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성질인 경우에 전자적 형식으로 서명을 첨부할 수 있다"(민법전 개정안 제1369-1조).

4. 망에의 접근

제4편 제1장은 위성시스템의 관리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위성시스템 인터넷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서의 고속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성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주파수의 할당은 국가행정기관(국가주파수청(ANFR))이 국제정보통신연맹(UIT)에 신고한 후에만 그리고 시스템간의 혼신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된 라디오통신법규를 준수한다는 조건하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법안 제27조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규정되었다 : ①프랑스 행정기관이 그가 UIT에 신고한 할당주파수를 사용하는 위성시스템에 의해 야기되는 모든 침해혼신을 중지시키는 등 라디오통신법규의 적용에 의해 그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것. ②위성시스템 안을 개발하는 기업에게 프랑스행정기관이 UIT에 그를 위하여 신고한 할당주파수를 사용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법률안은 UIT에 프랑스행정기관이 신고한 위성시스템에 대한 할당주파수의 운영을 위한 허가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기존상황의 적법화 절차가 법안 제28조에서 규정되고 있다.

법안 제4편 제2장은 고속인터넷접속에 중요한 벡터인 제3세대이동통신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조건을 정한다.

제29조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담당관은 이동통신운영자에게 합리적인 순회(itinérance)신청을 수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순회조건은 관계운영자의 부담부속서에 규정된다.

5. 정보화 사회의 안전성

제5편 제1장은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이나 사법기관이 보유하는 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즉, 사법기관에게 조사에 있어 입증요소로서 컴퓨터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러한 정보의 암수를 간소화하고, 컴퓨터범죄를 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이용자의 신뢰를 천제로 하는데, 이 신뢰를 증가시키는 수단중의 하나는 안전이 보장된 전자서명, 교환의 무결성과 비밀의 기능을 보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암호화수단의 사용이다. 공개망에 있어서 교환의 비밀성은 본질적인 것이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각자가 암호화 도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는 1999년 1월 19일의 정보화사회를 위한 행정각부위원회에서 암호사용의 자유화를 결정하였다. 이 자유화조치에는 암호수단을 범죄목적에 사용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이 법안은 암호의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6조 내지 제49조는 암호수단 및 암호제공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제36조는 비대칭키체계를 사용하는 암호수단을 포함하는 암호수단 및 암호제공의 기술적 성격에 관한 새로운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제37조는 암호수단의 수입, 공급, 사용 및 수출통제의 일반적인 틀(자유제도, 신고제도 및 허가제도)을 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décret n° 98-101 du 24 février 1998, décrets n° 99-199 et 99-200 du 17 mars 1999*)보다 암호수단의 통제방식을 크게 완화하고 있다.

제38조는 암호제공활동은 수상실의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 후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9조는 비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강화된 책임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제40조는 전자서명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강화된 책임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제41조는 제37조에 규정된 최소한의 의무에도 종속되지 않는 암호제
공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법제도의 자유화에는 범죄목적으로 암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
하여 공권력의 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법
안은 다음과 같이 두 방향으로 공권력의 강화를 규정하고 있다 : ①암호
화된 정보를 해독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해 개발되고 국방비밀에 의해 보
호되고 있는 수단을 일정한 조건하에서 사법기관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
②해독키 또는 해독된 문서를 권한있는 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범
죄로 형벌천에 규정하는 것. 제42조 내지 제47조가 이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다.

제 8 장 맷음말

프랑스는 1998년 이후 수상의 주도하에 프랑스사회 정보화의 일환으로 전자행정의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정부라는 용어보다는 전자행정(Administration électronique)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전자행정은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의한 행정조직의 현대화와 효율성의 제고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여 추진되고 있는데, 그 동안 전자행정의 기반이 되는 행정정보통신망의 구축, 전자우편의 보급, 공공사이트의 개설 등에 중점이 두어졌었고 이에 관하여 3년이 지난 지금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이에 반하여 대국민전자행정서비스는 전자서식의 제공, 조세신고, 사회보장행정분야, 운전면허분야 등 분야별 시범실시의 단계에 있었다. 향후 시범실시분야의 꾸준한 확대와 시범실시로 필요성이 입증된 전자행정서비스의 보편화를 도모하고 있다. 전자서식의 인터넷 제공에 관하여는 전자서식의 인터넷 제공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명령이 제정되어 현존하는 행정서식의 약 36%(600건의 서식, 사인에게 가장 많이 쓰이는 서식 전체)가 2000년 9월 현재 인터넷에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국민행정서비스는 전자민원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프랑스의 경우는 전자절차(téléprocédure)라는 용어로 민원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대국민행정의 전자화가 논의되고 있다.

행정의 전자화를 위하여 법제의 정비가 필요한데, 프랑스에서는 전자행정에 관한 일반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전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규정을 필요할 때마다 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방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전자행정의 추진단계에 있는 현재의 상황하에서 일반법률을 제정할 수 있을 정도로 대국민전자행정의 법적 문제가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적 규율이 변경될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다. 둘째는 그 동안의 전자행정의 추진이 주로 행정정보통신망의 구축, 전자우편의 보급, 공공사이트의 개설 등 행정조직의 전자화에 두어졌기 때문에 법적 뒷받침이 크게 요청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조직의 전자화는

정부행동계획이나 훈령을 통하여도 충분히 그 제도적 근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행정각부 및 각 행정기관에게 조직 및 대국민행정서비스의 전자화의 추진범위 및 추진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그 계획의 실행을 체크하기 때문에 3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 행정정보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는 충분한 이론적 검토를 거쳐 행하여졌다. 행정정보화의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면 문제별로 관계행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공식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고 제출된 보고서는 공개되고 법제도의 정비는 대체로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을 법제도화하는 것인 경우가 많다.

대국민전자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법령 정비로는 2000년의 전자서명법과 2001년의 전자서명법시행령의 제정, 1999년의 전자서식에 관한 수상의 명령, 전자적 방식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인정하는 행정절차규정, 1994년에 조세법전의 개정에 의해 도입된 전자조세신고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그리고, 1998년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정책선언 이전에 이미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전자정보도 그 규율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행정정보화에 맞추어 2000년 일부 개정이 있었다. 개인정보에 관하여 특기할 것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규율이 외에 의료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과 같이 개인정보의 종류별로 특별한 법적 규율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보화사회에 관한 법률안 (*Projet de loi sur la société de l'information*)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러한 법령이외에 통첩의 형식을 취한 행정정보화에 관한 행정규칙이 다수 존재한다.

프랑스의 경우 전자행정의 구현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98년 이후 3년 여가 지난 현재 대국민전자행정의 실행을 위한 기반구축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전자적 방식에 의한 대국민행정 실시분야의 확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한 법령의 정비가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국민 전자행정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여러 법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문서의 발신과 수신의 확인, 문서내용의 진정성 보장, 발신 및

도달시간의 확인, 전자결제 등이 그 것이다. 이중 문서내용의 진정성 보장은 전자서명의 도입에 의해 일단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전자행정이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국민에게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에서의 인터넷활용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을 통한 시민 특히 노인과 장애인의 인터넷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행정절차에 대한 질문에 대한 상담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망에의 접근의 용이성을 위해 전자행정에의 접근을 위한 단일창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단일창구는 간단한 문제는 즉시 처리하여 응답하고, 복잡한 문제는 해당 행정기관으로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에서는 현재 행정정보화가 주요한 국가정책의 하나로 계획적으로 밀도있게 추진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자행정에 관한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정도 활발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에 관한 공식 보고서가 계속 발행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행정정보화의 추진상황과 관련 법제도의 정비동향 및 행정정보화 관련 보고서를 계속 검토하여 우리나라 행정정보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COMMISSARIAT GÉNÉRAL DU PLAN, Diffusion des données publiques et révolution numérique,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9.
- _____, L'Etat et l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0.
-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2^e rapport d'activité 2000,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1.
- Dominique Maillard Desgrees du Lou, Droit des relations de l'administration avec ses usagers, puf, 2000.
- Guy Braibant, Données personnelles et sociétés de l'information,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8.
- Jean-Paul Baquast, Internet et les administrations, bergerlevrault, 1999.
- Michel BIBENT, LE DROIT DU TRAITEMENT DE L'INFORMATION, NATHAN, 2000.
- Pierre Tabatoni, La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dans la société d'information Tome 2, puf, 2000.
- Programme d'action gouvernemental, Préparer l'entrée de la France dans la société de l'information,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8.
- Thierry PIETTE-COUDOL, La signature électronique, Litec, 2001.